

탈시설론

2023년 9월 3일

머리말	3
시설	5
탈시설	7
1. 탈시설 개념	7
2. 장애인 거주시설의 대안	8
탈시설 지원 정책	10
1.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10
2.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2
3.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13
4.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14
전망과 대응	15
1. 시설은 어떻게 될까요?	15
2. 입주자는 어떻게 될까요?	16
3.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7
4. 탈시설 지원 정책에 관한 의견	18
탈시설화	20

부록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27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비평	30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해설	36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호 비평	38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비평	42
탈시설 주장에 관한 비판과 질문	54
국가인권위원회 탈시설 방안 연구 보고서 비평	80
탈시설의 이면과 뒷이야기	92
유감	98

머리말

1. 시설은 주거 시설과 지원 기관의 결합체입니다. 주거와 지원의 결합, 이것이 시설의 본질입니다.

정책으로서 탈시설은 시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일인데 그 본질은 주거와 지원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로드맵, 법률(안), 조례(안)들은 주거와 지원을 분리하겠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결합하겠다고 명시하거나 그럴 가능성을 열어 놓습니다.

유엔 가이드라인은 주거와 지원을 결합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나라는 없고 없을 겁니다. 탈시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도 지원주택과 그룹홈 등 주거와 지원의 결합체가 너무 많습니다.

시설이 없어지지 않는 걸 겁니다. 늘어날 겁니다. 탈시설은 대개 시설이라는 시설에서 시설이 아니라는 시설로 바꾸는 것에 불과할 겁니다.

2. 시설은 어떻게 될까? 입주자는 어떻게 될까? 사회사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물음에 답을 찾으려면 관련 로드맵과 법률(안)과 조례(안), 그리고 유엔 가이드라인, 이런 정책(안)들을 분석해야 합니다.

탈시설 지원 정책(안)들을 분석하려면 탈시설의 개념을 이해하고 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시설의 본질이나 구성 요소와 같은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글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시설의 실체를 밝히고, 탈시설의 개념과 가능한 대안의 선택지를 정리하여, 탈시설 지원 정책(안)들을 분석하고 전망과 대응책을 도출하는 겁니다.

3. ‘탈시설론’은 2018년 3월 29일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공청회](#)’를 계기로 관련 문헌들을 두루 살펴보고 나름대로 정리한 글입니다.

2018년, ‘탈시설 또는 탈시설화가 무엇이며 시설 사회사업은 어찌해야 하는가?’와 탈시설 담론의 주요 쟁점을 다루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탈시설 방안 연구 보고서에 대한 비평을 보았습니다.

2021년,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비평을 보였고 2022년, 복지부의 탈시설 로드맵, 서울시의 탈시설 지원 조례,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 19조, 일반논평 5호,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평과 탈시설 정책의 전망과 대응책을 보았습니다.

탈시설을 찬성하거나 반대한다는 주장은 없었고 없습니다.

사회사업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가 많으므로 복지[요결](#) 시설 사회사업 편을 먼저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탈시설 관련 문헌, 관련 행사, 관련 사이트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신 원고를 <http://welfare.or.kr>에 파일로 공유합니다. 임의로 인용 복사 인쇄 배부하시고 만만하게 질문 토론 비판해 주십시오. 우편, 메일, 전화, 문자, 다음카페, 화상회의, 대면회의, 어떤 방식이든 다 좋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15나길 20-6 (302호) servant@welfare.or.kr 010-3080-8197

시설

시설은 주거 시설과 지원 기관의 결합체입니다.

1) 주거 시설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려고 사회가 마련하여 제공하는 주택, 전담 지원 기관이 딸린 사회주택입니다.

이런 주택을 시설 주택이라고 합니다.

다른 주택 곧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할 목적의 주택이 아니고 지원 기관이 딸려 있지 않은 주택은 일반 주택이라고 합니다.

2) 지원 기관

시설 주택의 입주자를 전담하여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을 시설 기관이라고 합니다.

요컨대 시설은 주택과 기관의 결합체입니다. 주거와 지원의 결합, 이것이 시설의 본질입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시설의 개념도 이와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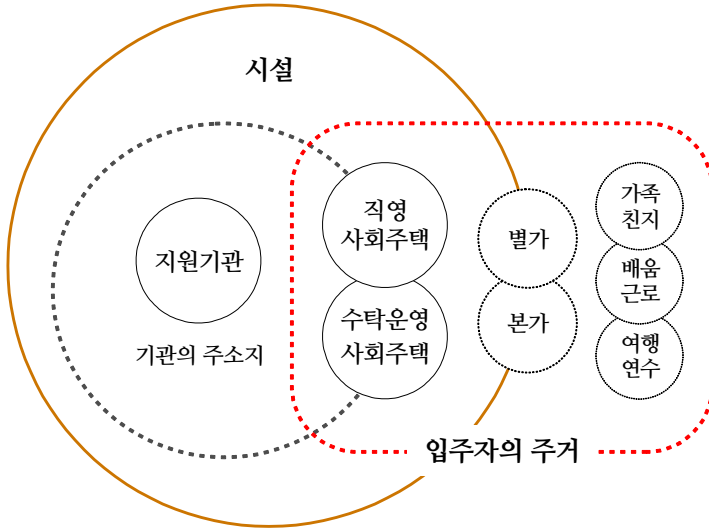
1. 장애인 거주시설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동법 시행규칙 별표 4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류'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시설 주택과 입주자의 주거

주거는 일정하게 머물러 살거나 일시 체류하는 곳입니다.

입주자는 주로 시설 주택에 살지만 일반 주택에 살기도 합니다. 주소지 주택이 아닌 곳에서 임시 거주하거나 며칠 묵기도 합니다.



지원 기관이 그 주소지 안팎에서 직영 또는 수탁 운영하는 사회복지주택이 시설 주택에 해당합니다.

별가와 본가는 일반 주택인데 지원 기관이 주거비와 생활비를 지급하며 시설 주택에 준하여 유지 관리를 지원합니다.

가족·친지 방문, 배움 일자리 여행 연수 따위로 일시 체류하는 곳은 일반 주택 또는 여관·호텔 기숙사 연수원 휴양림 야영장 따위입니다.

지원 기관은 입주자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의 필요에 따라 그 주거를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참조 : 25쪽 '주거 지원'

탈시설

1. 탈시설 개념

1) 시설에서 나가기 또는 나오기

시설 기관과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 주택에서 퇴거하는 겁니다.

2) 시설을 없애기

다른 주거 시설과 지원 기관을 마련하여 시설을 대체하는 겁니다.

시설 주택은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쇄하고 시설 기관은 기능을 전환하거나 해체하고 결국 시설 제도를 폐지하는 겁니다.

Deinstitutionalization

① 시설에서 나가게 또는 나오게 하기, 시설이 없어지게 하기

→ ‘탈시설+화’입니다. 그냥 탈시설이라고도 합니다.

② 시설화한 지원 방식이나 환경을 바꾸기

→ ‘탈+시설화’입니다. 탈시설화는 주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의 대안

1) 주거 시설

① 시설 주택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하려고 사회가 마련하여 제공하는 주택, 전담 지원 기관이 딸린 사회복지주택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인데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범주에 속할 장애인복지시설의 주거 시설입니다.

a. 케어주택

주로 케어 전문가가 일상적으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 최종증장애인시설의 주거 시설과 같습니다. 미주 1 : 케어주택과 사회사업

b. 지원주택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을 일상적으로 전담 지원합니다.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주거 시설과 같습니다. 예: 서울시 [지원주택](#)

c. 체험주택

이른바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일종의 과도 주택입니다.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체험홈과 같습니다. 예: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② 일반 주택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할 목적의 주택이 아니고 전담 지원 기관이 딸려 있지 않은 주택입니다.

주로 공공주택이겠으나 민간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 입주자의 주거 가운데 본가나 별가와 같습니다.

2) 지원 기관

① 전담 지원 기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전담하여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a. 시설 주택 장애인 전담 지원 기관

장애인 거주시설과 다른 범주의 시설 주택을 운영하며 그 주택의 입주자를 주야로 전담 지원합니다.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원 기관과 같습니다.

b. 일반 주택 장애인 전담 지원 기관

시설 주택을 운영하지 않고, 일반 주택 장애인을 주야로 전담 지원합니다. 참고 : 서울시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서비스](#)

② 일시적 단편적 서비스 제공 기관

a. 활동지원 중개 기관

스스로 (또는 가족의 도움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중개합니다.

b.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주간센터, 시군구, 읍면동... 주로 일반 주택 장애인을, 주로 평일 주간에, 지원합니다.

③ 사례관리 지원 기관

스스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렵고 일상적으로 필요한 각종 서비스나 자원을 스스로 찾아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이른바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전담 지원 기관이 아니면,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온갖 사례들의 관리를 일상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탈시설 지원 정책

1.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로드맵은 위 링크 페이지의 별첨 파일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안건.pdf'의 23~80쪽에 있습니다.

1) 대상 시설 :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거주시설

2) 지원 내용

① 주거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② 일상생활지원 : 주거유지서비스, 식사·영양 관리 바우처 제공, 후견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건강관리,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주거유지서비스) 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주택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각종 서비스 연계 등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

→ 탈시설해도 기존 거주시설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3) 신규 시설 설치

① 의료집중 등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주택 등을 제외한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

→ 케어시설과 지원주택 등의 신규 시설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② 탈시설 장애인이 독립생활 할 수 있도록 물리적 거주 공간(주택)과 복지서비스(주거유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지원

→ 주거와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시설에서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4) 기존 시설의 전환

① 장애인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심 전문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기능 변환 → 일부 장애인 거주시설을 케어시설로 특화하겠다는 겁니다.

로드맵 14쪽 : '18년 잉글랜드의 장기 돌봄서비스 이용 성인 발달장애인 13.1만명 중 2.4만명이 거주시설(케어홈, 너싱홈 등) 이용.

② 희망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 장애인 보호 기관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주거유지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 주거유지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원주택 운영 기관 및 일반 주택 장애인 전담 지원기관을 아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5) (단기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기능 정상화) 본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전반적인 시설점검 및 운영기준을 정비

6) 2022년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부터 매년 740여 명씩 자립 지원하여 2041년경에 지역사회 전환 마무리

요컨대

희망하는 시설은 케어시설로 특화하거나 탈시설 장애인 주거유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하고

탈시설 장애인을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과 지원주택에서 지원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주거유지서비스 제공 기관’이 지원하게 하되, 시설이 제공하던 지원을 그대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 2041년경에 지역사회 전환을 마무리한다면서도 모든 시설을 폐쇄한다거나 시설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법률로써 확정하지 않은 (민감한) 내용은 정권이나 관료에 따라 바뀌거나 사문화하기 쉽고,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어렵고, 실행하더라도 다들 방법이 없지 않으니, 굵어 부스럼 만들기보다 대충 덮어 두고 건드려 굳히기보다 허점과 여지가 있게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 지역탈시설지원센터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 지원, 주거지원, 활동지원, 법률행위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관계 및 심리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지원 등을 포함하는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지원 (제20조, 제22조)

2) 탈시설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추가 급여 및 정착지원금 지급 (제25조), 공공임대주택 우선 제공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제26조)

3) 장애인 거주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제30조),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시설로의 전환을 지원하고(제31조), 장애인 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폐쇄, 입소 정원을 축소하는 시설의 직원 급여 지원을 일정기간 유지(제32조)

요컨대, 탈시설 장애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제공하고 지원은 기존 시설에서 제공하던 지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에게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 주거와 지원을 결합할 여지를 두었으니 시행령 이하에서 지원주택과 그룹홈, 분산형 시설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스웨덴 캐나다 호주는 그룹홈이 있을 뿐 아니라 탈시설 후 그룹홈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미국 영국은 지원주택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 : 장애인 탈시설화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2022. 9. 26. (그룹홈 : 미국 91쪽, 스웨덴 105쪽과 109쪽, 캐나다 113~114쪽 | 지원주택 : 미국 92쪽, 영국 99쪽 | 케어서설 : 102쪽, 영국은 17,598개소의 케어홈과 너싱홈 운영 중)

다른 법률안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2022. 11. 1 ‘원하는’ 장애인에게 단기체험시설, 주거유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주택 따위의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은 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나 장애인 거주시설 외의 장애인복지시설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시설을 폐쇄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참조 : 대표 발의 의원의 [기고문](#))

3.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1) 대상 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과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제외

2) 탈시설 장애인 지원

지원주택 및 자립생활주택의 운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3)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지원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지원 및 지역사회통합,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

4) 시설 입주자 강제 퇴거나 시설 폐쇄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따위의 일반 주택을 제공한다는 조항은 없고 지원주택 및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한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시설을 폐쇄한다고 하지는 않고 변환을 지원한다고만 하니, 기존 시설을 유지할 수도 있고, 지원주택 및 자립생활주택 운영 기관이나 탈시설 장애인 지원 기관으로 변환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시설에서 제공하던 지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서울시 지원주택 [소개](#) | 운영 [매뉴얼](#) | 운영기관 [모집](#) (2022)

2022년 6월 현재 지원주택 운영기관 (9개) : 충현복지관, 프리웰, 성민복지관, 엔젤스헤이븐, 인강재단, 신아원, 우성재단,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사단법인 GSC

참조 : 75쪽 '프리웰 향유의집이 지원주택으로 전환한, 서울시 탈시설 [사례](#)'

미주 2 '서울시 지원주택은 [미신고](#) 시설? 탈법 편법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어'

※ 부산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내용은 서울시 조례와 유사합니다. 탈시설 장애인을 위해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지원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전원 퇴거나 시설 폐쇄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시설 입주자가 탈시설을 원하면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4.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1) 모든 형태의 시설 서비스를 폐지하고, 시설 신규 배치를 끝내야 하고, 시설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제8조)

2) 시설을 떠나는 사람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거나 집세를 지원해야 한다. (제32조)

3) 공동주택이나 할당된 지역 또는 지원 기관이 딸린 주택에 모여 살게 하는 것은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위배된다. (제32조)

같은 환경에 장애인 거주자가 이례적으로 많으면 시설이다. (제14조 & 일반논평 5호 제16조)

주거와 지원을 결합한 home은 지역사회 기반 세팅이 아니다. (제16조) 일반논평 5호 제36조 : 주거와 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패키지 형태는 안 된다.

※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은 공동주택이나 (주택공사 따위로부터) 할당받은 곳 또는 지원 기관이 딸린 주택에 모여 살게 합니다. 여느 주택에 비해 장애인 거주자가 이례적으로 많습니다. 지원주택은 주거와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 형태입니다.

4) 그룹홈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가 아니다. (제28조)

요컨대,

당사자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거나 집세를 지원하되 (장애인이 이례적으로 많이) 모여 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거와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 형태를 부정합니다. 그룹홈은 물론이고 지원주택도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탈시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도 주거와 지원을 결합한 그룹홈 지원주택 케어홈이 너무 많습니다.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지원 내용은 새롭거나 특별한 게 없습니다. 기존 장애인복지론에서 이야기해 오던 것들입니다. 시설에서도 그렇게 지원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탈시설 장애인’ 자리에 ‘시설 장애인’ 또는 그냥 ‘장애인’을 대입해도 되는 일반 장애인복지정책에 불과합니다.

전망과 대응

1. 시설은 어떻게 될까요?

1) 유지

기존 시설을 유지하되 주거와 지원을 개선할 겁니다. 작은 시설이나 그룹홈으로 분할하는 곳도 있고 케어시설로 특화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단지형 시설이 감소하고 분산형 시설과 그룹홈이 증가할 겁니다.

미주 3 : 분산형 시설

2) 변환

변환한다면 주로 지원주택 운영 기관으로 변환할 것이고 일부는 일반주택 장애인 전담 지원 기관으로 변환할 겁니다.

본질상 시설입니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 거주시설, UN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 ‘주거와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 형태’라고 하는 바로 그 시설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탈시설 운동가들이 지원주택을 잡았고 여러 시설 법인이 지원주택을 수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지원주택으로 변환하고 시설 법인에 위탁하는 데 별 반대가 없을 겁니다. 주로 기존 시설 법인이 지원주택을 수탁하여 시설에서 하던 일을 시설에서 하던 방식으로 계속할 겁니다.

3) 폐지?

주거 시설과 지원 기관의 결합체라는 본질상 시설을 다 없애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탈시설 선진국이라는 나라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요컨대, 시설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시설을 유지하되 소형화 다양화하고 주거와 지원의 질을 높이자, 대안을 마련하되 원하는 시설만 변환하게 하고 원하는 사람만 나가게 하자, 탈시설보다 탈시설화에 힘쓰자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겁니다.

2. 입주자는 어떻게 될까요?

1) 시설에서 나갈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독립 주거를 제공하고 독립생활하게 지원하면 더욱 그럴 겁니다.

2) 나간다면,

① 대부분 여전히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자력으로는 주택을 확보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담 지원 기관이 딸린 사회복지주택으로 이주할 공산이 큽니다. 본질상 시설인 곳으로 가는 겁니다.

② 일부는 일반 주택으로도 갈 수 있을 겁니다. 전담 지원 기관이 있다면 그리할 겁니다.

③ 기존 시설 입주자 가운데 일반 주택에서 전담 지원 기관 없이 예컨대 활동지원 중개 기관,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3) 시설에서 강제로 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장애인권리협약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57조와 제60조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등에 따른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조 : 2019. 8 '장애인거주시설 강제 퇴소 및 전원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

적절한 주거와 지원을 보장하지 않고 그냥 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거와 지원을 보장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입주자 본인, 부모나 후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이 내보낼 수도 없고 제3자가 데려갈 수도 없습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를 일반 주택으로 나가게 하는 조치는 강제 여부를 불문하고 인권 침해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3.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로드맵과 법률안과 조례에는 ‘주거와 지원을 결합한 형태’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지원주택과 그룹홈과 케어시설은 없애지 못할 겁니다.

로드맵과 법률안과 조례대로 시행하더라도 시설을 유지할 공산이 큼니다. 기존 시설을 없애더라도 지원주택 그룹홈 케어시설 따위의 대안 시설로 변환할 텐데 그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시설은 전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고,

법인은 기존 자산을 유지한 채 지원주택 운영사업이나 탈시설 장애인 지원 사업 따위로 사업을 변경 다각화 확장할 것이고,

종사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원주택 따위로 고용이 유지되는데 소규모로 분산되기 때문에 기관장과 상급직이 늘어날 것이고,

입주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여전히 지원받게 될 겁니다.

이러므로 로드맵 법률안 조례 그대로 정책을 충실히 시행하도록 촉구 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특정 조항을 삭제 수정 보완하라고 하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이 좋겠습니다.

참조 : 28쪽 ‘시설 주도의 탈시설 지원’, 18~19쪽 ‘요구 사항 예시’

시설 사회사업은 달라질 게 없습니다.

저마다 각각 자기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자기 삶’을 살게 돕고, 자기 일에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는 겁니다.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과 어울려 살게 돕고,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일반 수단을 이용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는 겁니다.

사회사업가는 내일 시설이 없어진다 해도 오늘 입주자를 이렇게 돕습니다. 떠날 사람일수록, 떠날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이렇게 돕습니다.

4. 탈시설 지원 정책에 관한 의견

1)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① 시설 주택을 독립 주거 수요에 맞게 증·개축 또는 신축할 수 있게 하거나 시설에 공공임대주택을 할당(위탁)합니다. 이와 함께

a. 시설 주택도 지원주택처럼 임대할 수 있게 합니다. 당사자에게 주거 급여와 생계급여 등을 제공하고 세입자로 점유하게 하는 겁니다.

b. 주거가 분산되는 만큼 지원 인력을 추가 배치합니다.

② 주거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 주거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주거 선택권을 제약하거나 퇴거를 강요하는 행위를 예방 단속하고 관련 민원을 처리할 전담 기구를 중앙과 각 시·도에 설치 운영합니다.

③ 시설 주택 입주자와 지원주택 입주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각종 급여와 지원금, 활동지원 등을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합니다.

④ 시설 입주자의 탈시설은 시설 기관이 전담 지원하게 합니다.

참조 : 28쪽 '시설 주도의 탈시설 지원'

⑤ 일반 주택에서도 시설 기관의 전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참조 :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서비스](#) 사업, 25쪽 '시설 입주자의 주거 지원'

⑥ 탈시설 지원 정책의 이름 및 설명에 '지역사회'나 '자립'을 넣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규정한 거주시설의 기능과 모순될 뿐 아니라 시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 : 59쪽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생활', 55쪽 '지역사회가 탈시설과 무슨 상관?'

2) 급하고 중요한 정책

① 응급 정책

장애인 300만 명 중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일상적으로 지원해 줄 전담 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몇 명쯤일까요?

학교, 치료실, 복지관, 주간센터, 직업시설, 평생교육센터 따위의 일시적 단편적 서비스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나머지 일상 전반의 지원을 오롯이 가족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가족과 함께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사람은 몇 명쯤일까요?

열 명 중 한 명이라고 해도 30만 명인데, 시설 주택에 입주하여 시설 기관으로부터 일상적으로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3만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7만 명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고도 시급합니다.

일상적으로 지원해 줄 곳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판국에 3만 명을 탈시설하게 하는 정책에 매달려야 할까요? 우선 시설 밖 27만 명을 지원하는 정책에 주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② 근본 정책

대상자를 지원하는 방식이 수용시설처럼 되는 현상, 그로 인해 대상자의 생활상이 수용시설처럼 되는 현상, 시설화가 문제입니다.

시설화한 지원 방식을 바꾸고 지원 방식이 시설화하지 않게 하는 정책이 시설에서 내보내거나 시설을 없애는 정책보다 더 근본적입니다.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의 본질적 변화는 탈시설이 아니라 탈+시설화에 달렸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사람 사는 것 같이 사는 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탈시설 정책이 아니라 탈+시설화 정책입니다.

탈시설화

1) 시설화

시설화는 지원 방식과 생활상이 수용시설처럼 되는 현상입니다.

미주 4 : 수용시설

① 시설화는 시설이라는 존재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에 오래 산다고 생기는 현상도 아닙니다.

지원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컨대 인력 예산 주거 따위가 열악하거나 정책 지식 철학 따위가 부적절하여 생기는 현상일 뿐입니다.

② 시설화는 시설에서만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지원주택은 물론이고 일반 가정에서도 생길 수 있고 복지관, 주간센터, 활동지원, 자립생활센터에서도 흔히 보이는 현상입니다. 어디서든 지원 방식이 시설화할 수 있고, 지원 방식이 시설화하면 당사자의 생활상도 시설화합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2) 탈시설화

탈시설화는 시설화를 벗어나기입니다. 시설화한 지원 방식을 바꾸고 지원 방식이 시설화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시설화한 당사자의 생활상을 바꾸고 시설화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시설에 살아도 탈시설화하면 시설 밖에 사는 것보다 나올 수 있고 시설 밖에 살아도 시설화하면 시설에 사는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탈시설화는 탈시설과 상관없이 필요한 일이지만 탈시설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탈시설화하면 시설에서 나갈 필요가 별로 없고 시설을 없앨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탈시설을 요구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시설화의 실상과 탈시설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지원주택은 물론이고 일반 주택, 일반 가정에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 시설화는 입주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현상입니다.

그로 인해 입주자가 자기 삶을 살지 못하거나 체념 포기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안전과 책임을 강조하다 보면 케어와 보호 또는 시설 내에서의 집단 활동 프로그램 외에 개개인의 삶을 위한 지원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자가 저마다 자기 삶을 살게 하는 일은 모두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곤 합니다. 사고 날 위험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주의 및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서 사고 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겁니다. 사고 뒷일이 사람을 힘들게 지치게 질리게 합니다.

이런 시비나 책임을 면피하려다 보면 입주자를 지나치게 ‘보호’하게 됩니다. 보호 행위는 사실상 간접 통제 구속에 가까워지고 시설은 결국 ‘감옥’ 같은 곳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설의 입주자는 ‘자기 삶’이 없고 그저 안전하게 ‘생존 연명’하게 될 뿐입니다. 시설의 인권 침해, 그 핵심은 입주자를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결국 ‘입주자 개개인의 삶’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탈시설화는 ‘입주자가 저마다 각각 자기 삶을 살게 돕기’입니다.

힘들고 위험할지라도, 아프고 다치고 죽는다 할지라도, 저마다 각각 자신의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살아가게 돕는 겁니다.

1) 무제한의 보호·감독 의무를 지워서 사고 나지 않도록 보호 통제하게 만드는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보호 대상, 기본적 보호,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한정이 없습니다. 사고가 났다 하면 어느 시설 누구라도 이로 인해 시비 문책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들이 그러합니다.

온갖 경우에 걸면 걸리는 죄목이라, 입주자의 인권 실현에, 사생활 및 지역사회생활 등의 법익 실현에, 그야말로 압초요 댓이요 족쇄입니다. 이보다 더한 독소 조항이 없습니다.

이 범조항에 의한 보호 의무를 엄격히 요구하면, ‘기본적 보호’의 범위나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입주자 개개인의 삶과 사람살이를 위한 지원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활동 참여, 외부와의 소통 같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 이외의 다른 법익을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보호’ 행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보호 대상과 기본적 보호의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 이로써 그만큼 중요한 다른 법익들을 실현하게 해야 합니다. 법 제59조의9제3호의 보호 의무로 인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참조 : 복지인권 ‘사고 대책’

2) 입주 계약서나 지원 계약서에 지원 원칙과 방법을 기술해야 합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이런저런 일을 최대한 당사자가 하고 둘레 사람과 함께하고 지역사회 일반 수단으로써 하게 지원한다고 명기합니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행위가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입주자마다 각각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치’를 합의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합니다.

운영 규정과 취업 규칙 및 근로계약서에도 이런 지원 원칙과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나친 보호 통제 행위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보호가 얼마쯤 필요할 뿐인데 시설 입주자라고 다 보호 대상자 취급함은 온당치 않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보호를 삼가지 않고, 시설 입주자 자체가 보호 대상인 양 이야기하거나 온갖 일에 보호하려 드는 잘못... 시설 입주자에 대한 인식에, 당사자의 삶에, 시설 사회사업과 입주자 인권 실현에, 이보다 나쁜 게 없습니다.

2. 시설화는 단체 생활을 일상화하는 현상입니다.

그로 인해 입주자가 저마다 각각 자기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단체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주거가 밀집되어 있고, 집단 케어나 집단 활동 따위로 입주자를 집단으로 움직이는 일이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여 집단 케어, 집단 활동이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밀집 주거 문제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탈시설화는 ‘독립생활하게 돕기’입니다.

가구마다 따로 생활하게 돕는 겁니다. 주거 공간이 지원 기관의 주소지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입주자는 대개 남남이라 각각 다른 가구입니다. 그러므로 입주자 개개인이 각각 독립가구로서 저마다 각각 독립생활하게 돕습니다.

독립생활은 ‘따로 하는 생활’입니다. 다른 가구나 동거인과 구별하여 따로 생활하는 겁니다.

독립생활은 생활의 자치에 달렸습니다. 주거의 위치나 형태, 동거 여부나 자립 여부에 달린 게 아닙니다.

다만 되도록 독채나 독방을 쓸 수 있게 주거를 개선하고 개별 케어와 개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인력을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3. 시설화는 입주자가 자기 일에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하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까지 대신 해 주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입주자가 그저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하는 현상,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조차 해 주기를 바라고 의존하려 드는 현상입니다.

탈시설화는 ‘입주자가 자기 일에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기’입니다.

자기 일, 이를테면 청소 세탁 취사 요리, 목욕 산책 운동, 생일잔치, 쇼핑, 여행, 구직, 취미 활동, 금전이나 물품 관리 같은 일을 당사자가 하게 돕습니다.

어려워하면 과정을 세분하거나 단계를 나누어 우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합니다. 나머지는 같이 하거나 대신 해주되 제안 설명 의논하여 당사자가 알고 동의하거나 요청하는 ‘당사자의 일’이게, 거들어 주거나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합니다.

일상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입주자마다 다르고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때 그 일에 필요한 만큼만, 그것도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한 후에 같이 하거나 대신 해 주는 겁니다.

이런 지원 원칙과 방법을 운영 규정과 취업 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입주 계약서나 개인별 지원 계획서에도 명시합니다.

당사자가 할 수 있고 하기 원하는 것까지 대신 해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당사자에게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당사자의 동의나 요청 없이 임의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4. 시설화는 입주자의 시설 밖 주거를 지원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로 인해 입주자의 주거가 사실상 시설에 고정되는 현상입니다. 입주할 때부터 퇴거할 때까지 거의 그 시설 주택에 거주합니다. 하릴없이 그곳에 붙박여 사는 겁니다.

시설 사회사업가가 입주자의 주거를 시설 밖까지 넓혀서 다양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까닭은 시설 밖 주거까지 지원할 인력과 예산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설 밖 주거를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따위로 감독관청이 꺼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탈시설화는 ‘입주자의 주거를 다양하게 지원하기’입니다.

입주자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따라 그 욕구와 역량에 맞게 시설 밖 주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법이나 지침에 입주자의 시설 밖 주거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고 그렇게 지원하도록 관청이 지도 감독하게 해야 합니다.

입주자의 시설 밖 주거 지원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지원 기관의 주소지 밖에 있는 시설 주택에서 살게 돕습니다.
- ② 별가살이 : 시설 주택이나 본가 외에 딴 집을 구해 따로 살게 돕습니다.
- ③ 본가살이 : 본가에서 살게 돕습니다.
- ④ 단기주거 : 때때로 가족 친지를 비롯한 둘레 사람의 집에 하루 이틀이나 며칠 다녀오는 것을 돕습니다. 학원이나 일자리, 여행이나 연수 따위로 타지에서 얼마간 지내는 것을 돕습니다.

어디에 거주하든 시설 입주자이므로 시설이 책임지고 지원합니다. 집 주인이나 동거인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돕습니다. 입주자는 언제든지 시설 주택으로 돌아오거나 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시설화는 입주자를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로부터 따로 떼어 돕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입주자가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1) 입주자가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는 데 둘레 사람이 함께하게 주선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자가 둘레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소외되고 잊혀 갑니다.

2) 지역사회 일반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하지 않고 입주자 전용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줍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일반 수단 쪽 사람들이 입주자를 외면 기피 배제 차별하게 됩니다. 후원 봉사 대상자쯤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취급하기 십상입니다. 입주자가 지역 주민 시민으로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어려워지고 사회로부터 멀어집니다.

3) 입주자가 ‘사람 구실’ 하게 돕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자가 사람들에게 사람대접은커녕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탈시설화는 ‘입주자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기’입니다.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으로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둘레 사람의 일로 입주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입주자의 일로 둘레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 시민으로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게 돕는 겁니다.

나아가 ‘사람 구실’ 하며 살게 돕습니다. 어울리는 관계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하거나 하면 좋은 일,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으로 인정받고 사람으로 존중 환영받을 만한 일을 하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시설 스스로 탈시설화하지 않으면, 입주자는 탈시설을 갈구할 것이고 장애 운동이나 인권 운동에서의 탈시설 요구도 계속될 것입니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2022. 1. 24 보건복지부 [공지](#)

1. 사업 대상 :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현재 거주 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입소 대기 장애인 총 200명 (지역당 20명, 시설 입소 대기 등록 장애인은 당 최대 2명)

2. 지역당 5명의 자립지원인력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1) 대상자 발굴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① 정보제공 : 지역사회 홍보, 거주시설 연계를 통한 자립지원 안내

② 자립지원조사 : 개별 면담 및 자립지원조사 수행

③ 지원계획수립 : 자립지원조사 결과에 기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2) 이주 지원 :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구매, 전입신고, 급여관리자 지정, 가스·인터넷 신청 등 생활에 필요한 전반사항 사전 준비

3) 사례관리 및 주거유지서비스 지원

① 주거유지 : 자립생활인식, 주거공간 안전, 주거관리 및 유지, 공동주택 에티켓 준수, 임대계약 확인 등

② 일상생활지원 : 신분증 관리, 수납정리, 의복관리, 식사계획 및 장보기, 음식물 조리 및 보관, 주방정리,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 냉난방기 사용 및 관리, 소비생활 지원, 비상대응 등

③ 사회참여 지원 : 쇼핑, 교통수단이용, 여가활동 계획 및 실행, 낯활동, 기관 이용, 주민센터 이용, 의사소통기술,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 등

④ 옹호지원 : · 자기의사에 의한 선택 지원, 선택과 책임, 자신과 타인의 권리, 옹호관련 기관 연계, 법률 및 구제지원 등

3. 자립지원인력의 자격 : 장애인 복지 분야 경력 평균 4급 5호봉 이상, 사회복지학 재할상담 특수교육 등 관련 전공자

4.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

1) 사업 대상에 ‘입소 대기 장애인’을 포함한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이런 지원이 어떤 장애인에게 더 시급하고 절실한가 하는 점에 보면 ‘최소 18명’이라고 해도 부족하다 할 판국인데 ‘최대 2명’이라니요? 정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못내 아쉽습니다. 참조 : 19쪽 ‘우선순위’

2) 장애인 20명당 지원인력 5명이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 배치 기준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동일한 장애인인데, 지원 수요는 그대로인데, 이 정도 인력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오랜 기간 당사자 및 당사자의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시설 사회사업가들이 못했다는(?) 일을, 당사자의 지역사회는 고사하고 당사자와도 함께한 적이 없는 외부의 자립지원인력이 할 수 있을까요?

3) 자립지원인력의 역할이라는 게 시설에서 입주자를 지원하는 일, 시설 사회사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자격도 특별히 더 나을 게 없는 동급의 사회복지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 사회사업가는 손 떼고 빠지라는 듯, 시설 사회사업가를 대놓고 무시하는 꼴이기 쉽겠습니다.

시설 사회사업가에게 예의를 갖추면 좋겠습니다.

4) 시범사업 기관과 기존 시설 기관

시범사업 기관은 기존 시설 기관이 그 입주자의 탈시설을 잘 지원하게 지원합니다. ‘현재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은 그 시설의 사회사업가가 다음과 같이 지원하게 지원하는 겁니다.

① 주거 전환 이전

a.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게 돕습니다. 자기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자기 삶을 살게 돕고, 자기 일에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는 겁니다.

b.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둘레 사람과 서로 연락 접촉 왕래

하며 이런저런 일에 함께하게 주선하고, 지역 주민 시민으로서 사람들과 어울리게 돕는 겁니다.

c. 지역사회가 입주자도 살 만하고 입주자와 더불어 사는 곳이게 합니다. 장애인도 살 만하고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곳이게 하는 겁니다.

탈시설 준비 또는 탈시설 지원의 핵심이 이러합니다. 나가서도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해야 나가서도 이렇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② 주거 전환 과정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고 이사하게 돕습니다.

저축한 돈, 연금이나 수당, 일하여 버는 돈, 둘레 사람이 보탬 수 있는 돈, 자립정착금 따위로써 감당할 수 있는 집을 구하게 돕습니다. 주택 개보수, 살림 장만, 집들이도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하게 돕습니다.

③ 주거 전환 이후

새 주거가 지원 기관이 딸린 사회주택이면 그 기관에 인계합니다.

당사자가 자기 삶을 살아온 기록, 당사자의 강점, 어울려 살아온 둘레 사람, 이용해 온 지역사회의 일반 수단과 자원, 지원해 온 원칙과 방법 따위를 당사자와 함께 그 기관의 담당자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새 주거가 일반 주택이면 시범사업 기관에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시범사업 기관과의 합의하에 기존 기관이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 연장하면서 사후 지원을 하는 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기관이 직접 지원한다면, 일부 생활 과업을 때때로 지원하는 정도 또는 일부 사례의 관리를 간헐적으로 지원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기존 시설의 반박에 안 되는 인력으로 기존 시설에서 생활 전반에 걸쳐 일상적으로 전담 지원하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일상적 지원이나 종합적인 사례관리 지원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시범사업은 이 정도 지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입주자, 간헐적 지원으로도 자기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함이 좋겠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비평

1. 제안 이유

2017년 기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이 1,517개소이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은 30,693명에 달하였음.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상당수의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1) “2017년 기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이 1,517개소이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은 30,693명에 달하였음.”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말일까요? 무슨 기준으로 그렇다 할까요? 얼마나 많으면 탈시설을 지원하고 시설을 폐쇄할 이유가 될까요?

2)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시설 보호가 곧 그런 생활을 강요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시설이 그런 생활을 강요한다면 ‘획일적이고 집단적인 생활 강요 금지 법률안’을 제안해야지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할 일이 아닙니다.

3) “상당수의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렇다면 인권 침해 행위를 못하게 할 일이지 하필 탈시설 지원이니 시설 폐쇄니 하는 걸까요? 시설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시설에서만 인권 침해가 발생할까요? 진단도 처방도 온당치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면 어떤 기관이 남아날 수 있을까요?

2. 용어 정의

제2조(정의) 5. “탈시설”이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1) 탈시설은 한마디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수단이나 양태를 나타내는 부사어일 뿐입니다. 다른 조항들에서 ‘탈시설’ 자리에 이 개념을 대입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제6조, 제7조, 제8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 제27조의 탈시설도 제2조에서 밝힌 뜻의 ‘탈시설’과 아주 다릅니다.

제2조의 정의대로 탈시설이 그런 뜻이면,

탈시설하는 장애인(제6조, 제8조, 제9조)은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니 더 지원할 필요가 없고, 탈시설한 장애인(제27조)은 그렇게 살아간 장애인 곧 죽은 사람이니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왜 ‘탈시설’의 정의에 넣었을까요?

지역사회 통합은 어떻게 돕는가에 달린 문제입니다. 시설에서 나가면 된다 할 것도 아니고 시설에서는 안 된다 할 것도 아닙니다.

시설에 거주해도 개인별 주택을 제공하면 거기 살 수 있습니다. 시설에 거주해도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에 거주해도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별 주택에 사는 것,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받는 것,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은 지원하기 나름입니다. 시설에서 나가면 된다 할 것도 아니고 시설에서는 안 된다 할 것도 아닙니다.

참조 : 59쪽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생활’

3. 기본 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 및 유형, 자산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모든 장애인은 제약이 최소화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어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정당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원칙은 ‘탈시설’과 상관이 없습니다.

시설 입주자도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약이 최소화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어야 하고, 시설 입주자 지원도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어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정당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설에서도 입주자를 이렇게 지원해야 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설이 이렇게 지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탈시설 장애인을 이렇게 지원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게 얼마든 그것의 일부만 시설에 배정해도 입주자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시설에서 이렇게 지원하지 못하면 시설 밖에서도 이렇게 지원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설 밖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면 시설이라고 이렇게 지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건 탈시설 여부로써 차별 적용할 원칙이 아닙니다. ‘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기본 원칙이라고 해도 좋을 원칙입니다.

무엇보다, 제3조에서 밝힐 원칙은 탈시설 지원의 원칙일 것 같은데... 여기 나열한 것은 그런 원칙이라고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컨대 주거 전환 이전, 주거 전환 과정, 주거 전환 이후로 나누어 각각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관한 원칙을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참조 : 28쪽 ‘탈시설 지원의 원칙’

4. 장애인의 권리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다.

②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주거형태 및 동거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③ 장애인은 자신의 거주지, 주거형태 및 동거인 선택을 포함한 삶의 방식에 관하여 스스로의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⑤ 장애인은 비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⑥ 장애인은 자신의 지역사회 정착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이런 권리는 ‘탈시설’과 상관이 없습니다.

시설 입주자도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합니다. 시설 입주자도 자신의 거주지, 주거 형태 및 동거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 입주자도 삶의 방식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시설 입주자도 지역사회 일반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지역사회 정착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에서도 입주자를 이렇게 지원해야 하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지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탈시설 장애인을 이렇게 살게 지원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게 얼마든 그것의 일부만 시설에 배정해도 입주자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5. 탈시설 지원

제14조(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탈시설 준비·전환·정착 과정 지원

② 지역탈시설지원센터에는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탈시설 준비, 주거 전환, 정착 과정을 지원하는 일 - 이런 일은 입주자를 책임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시설이 이미 얼마쯤 이렇게 지원해 왔고 인력과 예산을 추가하는 만큼 확대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법과 지침에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면 모든 시설이 할 수 있습니다.

탈시설을 준비하는 일은 일상생활 속에서 상당 기간 꾸준히 지원해야 하는데, 외부인이 할 수 있을까요? 지역탈시설지원센터 따위의 외부 기관이 할 수 있는 탈시설 지원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참조 : 28쪽 '탈시설 준비 전환 정착 과정을 지원하는 일의 내용과 방법'

지역탈시설지원센터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센터에 얼마나 대단한 인력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전담 인력을 어떻게 확보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준비 전환 정착 과정을 지원한 후에, 10년 후에, 센터는 어찌되며 전담 인력은 어찌될까요? 일반 주택 장애인의 탈가정 준비 전환 정착을 지원하는 탈가정지원센터로 변환하고 탈가정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전담 인력으로 유지할까요? 아니면 해체, 해고할까요?

6. 탈시설 지원계획의 수립

1) 탈시설 계획 수립의 주체

제22조(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④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욕구조사의 결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⑤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은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료인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탈시설지원 전문인력이 참여한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팀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해당 장애인이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게 지원하되 전문 인력이라는 사람들에게도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사자 없이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당사자의 탈시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지원 계획을 세운단 말입니까?

2) 탈시설 지원 계획의 통보

제22조(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⑦ 지역탈시설지원센터는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결과를 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탈시설지원센터가 탈시설지원계획을 결정하여 통보한다니...

위의 제5항과 마찬가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탈시설의 당사자를 탈시설 지원 계획의 통보 대상자로 본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법률안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0. 12. 10 최혜영 의원 등 68인

참조 : 보건복지위원회 검토 보고서 및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38~43쪽)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해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 한국어 번역문 출처 : [외교부](#)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원문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9](#)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탈시설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1)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이라는 게 탈시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시설 주택에 살든 지원주택에 살든 일반 주택에 살든, 어디에 살든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게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시설이 그렇게 살게 돕지 않으면 그렇게 살게 도와라고 할 일이지 탈시설을 운운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돕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예컨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늘리라 할 일이고 법이나 지침이 부적절하면 수정 보완해라 할 일이지 탈시설을 운운할 게 아닙니다.

2)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시설 주택이든 지원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주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주거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주거를 취할 것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3) ‘나’항과 ‘다’항도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살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해야 합니다.

어디에 살든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설에서도 이렇게 도울 수 있습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이렇게 도울 수 있습니다. 시설 밖이라고 이렇게 돕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그러합니다.

요컨대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탈시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은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호 비평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21. 4.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장애인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 국문 pp.92~120 / 영문 pp.276~305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포용에 관한 일반논평 5호 (2017)

16. 본 일반논평에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a) 자립적 생활: 자립적 생활이란 장애를 가진 개인이 자신의 삶에 관하여 선택과 통제를 수행하고 삶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받음을 의미한다.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은 교통, 정보, 통신, 활동보조, 거주지, 하루 일과, 습관, 적절한 고용, 사회적 관계, 의복, 영양, 위생 및 보건, 종교 활동, 문화 활동, 성·생식의 권리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자립적 생활에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내가 누구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몇 시에 자는지, 실내에 있을 것인지 외출할 것인지, 식탁 위에 식탁보와 초를 둘 것인지, 반려동물을 둘 것인지, 음악을 들을 것인지 등과 같이 개인의 정체성과 인격을 발전시키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과 결정이 곧 내가 누구인지를 구성한다. 자립적 생활은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며, 꼭 홀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립적 생활을 스스로 일상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만 해석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자립적 생활이란 협약 3(a)조에 포함된 천부적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에 관련된 선택과 통제의 자유로 간주되어야 한다. 개인적 자율성이라는 형태로서의 자립은 장애를 가진 개인이 자신의 생활 형태와 일상 활동에 관한 선택과 통제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음을 의미한다.

→ 자기 삶을 선택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음, 선택과 통제의 자유, 자신의 생활 형태와 일상 활동에 관한 선택과 통제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음

이런 건 자주성이나 독립생활 개념에 가깝습니다. 미주⁵ : 자주, 독립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자주적 생활이든 독립적 생활이든 자립적 생활이든 탈시설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설에서도 이렇게 살게 도울 수 있습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이렇게 살게 도울 수 있습니다. 시설 밖이라고 이렇게 살게 돕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그러합니다.

(b) 지역사회에의 포용: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는 협약 내용 중에서도 특히 3(c)조에 포함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포용·참여의 원칙과 관련된다. 여기에는 충분한 사회적 생활의 영위와 더불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포함된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대중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더불어 장애인이 모든 사회생활의 영역에 완전히 포용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포함된다. 이들 서비스는 특히 주거, 교통, 소비, 교육, 고용, 오락 활동 및 사회 매체를 포함하여 대중에게 제공되는 모든 기타 시설·서비스와 관계될 수 있다. 이 권리는 또한 공청회, 체육 행사, 문화 행사, 종교 행사 및 장애인이 참가하고자 하는 기타 활동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내 모든 정치적·문화적 생활에 수반되는 조치와 행사에의 접근을 포함한다.

→ 시설에서도 이렇게 살게 도울 수 있습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이렇게 살게 도울 수 있습니다. 시설 밖이라고 이렇게 살게 돕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그러합니다.

(c) 자립적 주거 형태: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내 포용은 둘 모두 모든 유형의 거주 시설의 외부 생활환경을 가리킨다. 이는 단순히 특정 건물이나 환경에서의 거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특정 생활 형태와 주거 형태로 인하여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백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시설도, 5~8명이 사는 작은 그룹홈도, 심지어는 혼자 사는 집도 시설 또는 시설화의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자립적 주거 형태로 볼 수 없다. 시설화된 환경은 그 규모·이름·형태가 제각각 다르지만, 타인과 활동보조 제공자를 의무적으로 공

유해야 하고, 보조 제공자를 선택할 힘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으며,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로부터 고립 및 분리되고, 일상의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며, 동거인을 선택할 수 없고,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관계없이 정해진 일과를 수행해야 하며, 특정 기관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활동을 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이 가부장적이며, 주거 형태가 감독의 대상이 되고, 일반적으로 같은 환경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수가 불균형하다는 본질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 지원주택은 장애인 거주자가 여느 주택에 비해 유난히 많습니다. ‘같은 환경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수가 불균형’합니다. 지원주택은 시설화한 환경이라는 말이고 본질상 시설이라는 말입니다.

34. 19조는 물적 범위 측면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주거, 개별 서비스, 지역사회 시설·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다루고 있다. 주거에 대한 접근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선택권을 가짐을 의미한다. 주거가 특별 설계된 지역 내에서만 제공되거나 장애인들이 같은 건물, 같은 단지, 같은 동네에서만 살게 되어 있다면 19조는 적절히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 지원주택은 여러 장애인을 같은 동네, 같은 단지, 같은 건물에 살게 하는 방식의 주거입니다. 장애인권리협약 19조를 적절히 이행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36. 거주와 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일명 결합 ‘패키지’)로 제공되는 지원서비스는 비용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전제 자체도 경제적으로 반박 가능할뿐더러, 비용 효율성이라는 측면은 당면한 인권이라는 핵심보다 우선할 수 없다.

→ 지원주택은 주거와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 형태입니다. 지원주택도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49. 19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의 존중이란 당사국이 시설입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어떠한 신규 시설도 당사국에 의하여 설립될 수 없으며, 기존 시설의 개조 또한 시설 거주자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급한 조치가 아닌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 시설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기존 시설 거주자들이 떠나고 새로운 거주자가 들어와서도 안 된다. 시설에서 확장된 이른바 ‘위성’ 주거 형태, 즉 개인적 생활의 모습(아파트 또는 단독 주택)을 취하고 있지만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거 형태는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

→ 시설 입소? ‘시설 주택에 입주하여 시설 기관의 지원을 받는 일’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신규 시설도 설립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른바 위성 주거 형태 곧 시설 기관이 운영하는 아파트나 단독 주택에서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형태가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8. 탈시설화는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복합적 전략의 일환으로서 시설의 폐쇄와 시설 수용 제도의 철폐가 포함된다.

→ 시설을 폐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설 수용 제도? ‘시설 주택에 입주하여 시설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왜 철폐해야 할까요?

시설이라서 안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시설이라서 안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시설 기관은 할 수 없고 일반 기관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시설 기관이라서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일까요?

정부 지원에 차별이 없다면, 시설 주택이 일반 주택보다 못할 이유가 무엇이며 시설 기관이 다른 기관처럼 못할 일이 무엇일까요? 시설이라고 개선하지 못할 게 무엇일까요?

참조 : 54쪽 ‘시설을 없애야 한다 할 이유가 무엇인가?’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비평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2022. 9. 9
영문 출처 : UN 장애인권리위원회 ※ 비마이너에 [한국어판도](#) 있습니다.

1. These guidelines complement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5 (2017) and its guidelines on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 14). They are intended to guide and support States parties, in their efforts to realize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and to be the basis for planning deinstitutionalization processes and prevention of institutionalization.

→ 자립적으로 살고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는 탈시설과 관계없이 보장해야 하고 보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은 ‘탈+시설’해야 되는 게 아니고 ‘탈+시설화’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deinstitutionalization은 탈시설이 아니라 탈시설화일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립생활이나 지역사회 통합을 내세워 탈시설을 운운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뜬금없고 생똥맞은 이야기입니다.

6. Institutionalization is a discriminatory practic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constitutes detention and deprivation of liberty based on impairment. States parties should recognise institutionalization as a form of violenc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stitutionalization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다, 장애가 있다고 구금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폭력으로 봐야 한다.

→ Institutionalization이 ‘시설 주택에 입주하여 시설 기관의 지원을 받게 함’을 가리키는 용어라면 이 조항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차별하거나 구금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는 금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이 이런 곳이고 시설 서비스가 이런 것이라는 뜻 싸잡아 단정함은 심각한 오해와 편견입니다.

7. Institutionalization contradicts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시설 서비스는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에 반한다.

→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에 반하는 일은 어디 서든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일 뿐입니다. 시설에서만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지원주택은 물론이고 일반 가정에서도 생길 수 있고 복지관, 주간센터, 활동지원, 자립생활센터에서도 흔히 보이는 현상입니다.

요컨대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에 반하는 일은 시설의 본질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시설에서도 입주자마다 각각 독립적으로 생활하게 돕고 지역사회 일반 수단으로써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도울 수 있습니다. 지원하기 나름입니다.

참조 : 59쪽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생활’

8. States parties should abolish all forms of institutionalization, end new placements in institutions and refrain from investing in institutions. Institutionalization must never be considered a form of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r a “choice”.

모든 형태의 시설 서비스를 폐지하고, 시설 신규 배치(입주 의뢰) 를 끝내야 하고, 시설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시설 서비스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방식이나 선택지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 절대로.

미주 6 : 시설 서비스를 선택지로 보면 안 된다? 그냥 그래야 한다?

9. There is no justification to perpetuate institutionalization. States parties should not use lack of support and services in the community, poverty or stigmas to justify the ongoing maintenance of institutions, or delays to their closure. Inclusive planning, research, pilot projects or the need for law reform should not be used to delay reform or to limit immediate action to support community inclusion.

지역사회의 지원과 서비스 부족, 가난이나 스티그마를 이유로 시설을 유지하거나 시설 폐쇄를 지연시키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지역 사회 포함 계획을 세운다느니 조사를 한다느니 시범사업을 한다느니 법을 개정해야 한다느니 하며 지역사회 포함을 위한 개혁을 미루거나 즉각적 행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지역사회 지원과 서비스 부족, 가난이나 스티그마를 이유로 시설을 유지하거나 시설 폐쇄를 지연시킨다고? 그보다는 사회복지와 전담 지원 기관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 “지역사회 포함을 위한 개혁을 미루거나 즉각적 행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당연합니다. 그래야지요. 그런데 이게 탈시설과 무슨 상관입니까? 탈시설하든 하지 않든, 시설 주택에 살든 일반 주택에 살든, 지역사회 통합(포함)을 위해 필요한 개혁을 해야지요.

11. Deinstitutionalization processes should aim at ending all forms of institutionalization, isolation and segreg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both private and public spheres.

탈시설? 탈시설화?는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시설 서비스, 고립과 분리의 종식을 목표로 해야 한다?

→ 시설은 장애인을 고립시키거나 분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설은 지역사회 주택 가운데 하나이고 입주자는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기 나름입니다.

시설 서비스는 장애인을 고립시키거나 분리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시설 사회사업은 더욱 그러합니다. 시설 서비스, 시설 사회사업은 입주자의 지역사회 생활,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고립과 분리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일 뿐입니다. 시설 서비스의 본질이 아닙니다. 시설에서만 생기는 현상도 아닙니다. 일반 가정, 복지관, 주간센터, 자립생활센터에서도 흔히 보이는 현상입니다. 요컨대 장애인에 대한 고립과 분리는 시설의 본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고립과 분리의 종식은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탈시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14. There are certain defining elements of an institution, such as obligatory sharing of assistants with others and no or limited influence as to who provides the assistance; isolation and segregation from independent life in the community; lack of control over day-to-day decisions; lack of choice for the individuals concerned over with whom they live; rigidity of routine irrespective of personal will and preferences; identical activities in the same place for a group of individuals under a certain authority; a paternalistic approach in service provision; supervision of living arrangements; and a disproportionate number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same environment.

시설의 규정 요소 : 지원자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하고/하거나 지원자에 대한 선택권이 없거나 제한적임;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 생활로부터 격리되고 분리됨; 일상의 결정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함; 함께 살 사람을 선택할 수 없음; 일과가 개인의 의지 및 선호와 관계없이 획일적임; 같은 곳에서 집단으로 같은 활동을 함; 서비스를 권위적으로 제공함; 생활방식을 감독함; 한 곳(동네, 단지, 건물...)에 사는 장애인의 수가 다른 곳에 비해 유난히 많음

→ 이런 요소는 시설이든 지원주택이든 일반 가정이든 어디서든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거나 지원 방식이 부적절할 때 생길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예컨대 ‘지원자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하는지’는 인력을 배치하

기 나릅니다.(미주 7) 다른 요소들도 시설의 본질적 속성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 생활로부터 격리되고 분리됨, 일상의 결정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함, 함께 살 사람을 선택할 수 없음, 일과가 개인의 의지 및 선호와 관계없이 획일적임, 같은 곳에서 집단으로 같은 활동을 함; 서비스를 권위적으로 제공함, 생활방식을 감독함’

이런 것은 지원주택이나 일반 가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시설화’를 정의하는 요소라 할 수는 있어도 시설을 정의하는 요소라 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 : 20쪽 ‘시설화’

어쨌든 ‘한 곳(한 동네, 같은 단지, 한 건물...)에 사는 장애인의 수가 다른 곳에 비해 유난히 많음’ - 이 기준에 따르면, 지원주택에 사는 장애인이 어느 주택에 비해 유난히 많으니 지원주택도 시설입니다.

참조 : 프리웰 지원주택 [현황](#) - 장안동 8호 9명, 오류동 5호 10명...

15. 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fers to any detention based on disability alone or in conjunction with other grounds such as “care” or “treatment”. Disability-specific detention typically occurs in institutions that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social care institutions, psychiatric institutions, long-stay hospitals, nursing homes, secure dementia wards, special boarding schools, rehabilitation centres other than community-based, half-way homes, group homes, family-type homes for children, sheltered or protected living homes, forensic psychiatric settings, transit homes, albinism hostels, leprosy colonies and other congregate settings.

장애인에 대한 시설 서비스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케어를 명분으로 구금하는 것이다. 구금은 전형적으로 시설에서 발생하는데 그룹홈, 중간 주택, 경유 주택, 집합 세팅이 이런 시설에 포함된다.

→ 시설 서비스는 구금이다? 구금은 전형적으로 시설에서 발생한다? 시설 서비스는 본디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시설도 그렇

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시설 밖에서보다 더 그렇다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도 모두 구금 시설이라는 말입니다.
자립생활주택은 그룹홈이면서 중간 주택 또는 경우 주택에 해당합니
다. 지원주택은 집합 세팅에 해당하고 1호에 2인 이상 사는 지원주택
은 그룹홈에도 해당합니다. 예: 서울시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

16. All institutions, including those run and controlled by non-State actors, should be included in deinstitutionalization reforms. The absence, reform or removal of one or more institutional elements cannot be used to characterize a setting as community-based. Such is the case, for example, in settings where adults with disabilities continue to be subjected to substituted decision-making or to compulsory treatment, or where they have shared assistants; settings located “in the community” where service providers set a routine and deny autonomy; or “homes” where the same service provider packages housing and support together.

시설적 요소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없거나 그것을 개선 또는 제거했다
고 그곳을 지역사회 기반 세팅으로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성인인데 다
른 사람이 대신 결정을 하거나 강제로 치료하거나 지원자를 공유하거
나 서비스 제공자가 일과를 정하거나 한 서비스 제공자가 주거와 지원
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곳이 그러하다.

→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하거나 강제로 치료하거나 지원자를 공유하
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일과를 정하는 곳’은 지역사회 기반 세팅으로
볼 수 없다? 주거와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곳도 그렇다?

이런 기준으로써 ‘지역사회 기반’ 여부를 따지다니 생똥맞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여부는, 어느 사람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일반 수단으로
써 복지를 이루며 살아가게 돕는가? 이런 기준으로써 따져야 합니다.

어쨌든 지원주택은 주거와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니 지원주택도 지

역사회 기반 세팅으로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17. States parties should recognize that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refer to life settings outside residential institutions of all kin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는 것과 지역사회에 포함(?)된다는 것은 ‘모든 종류의 거주 시설’ 외의 세팅을 가리킨다.

→ 독립생활이나 지역사회 통합은 사는 곳에 달린 게 아닙니다.

거주시설에 산다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거나 지역사회 통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거주시설 밖에 산다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거나 지역사회 통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독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은 탈시설에 달린 게 아닙니다. 시설 안에서든 밖에서든 지원하기 나름입니다.

19. Deinstitutionalization comprises interconnected processes that should focus on restoring autonomy, choice and control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to how, where and with whom they decide to live.

탈시설? 탈시설화는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살지에 대한 자율성과 선택권과 통제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살지 선택 통제할 수 없는 현상은 시설에서만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지원주택은 물론이고 일반 가정에서도 생길 수 있는 현상입니다. 어디서든 입주자의 주거를 적절히 지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살지 자율적으로 선택 통제하기, 이런 것은 시설에서 나가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시설에서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탈시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원하기 나름입니다.

시설 사회사업은 입주자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따라 그 주거를 다

양하게 지원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서 Deinstitutionalization을 ‘탈시설’로 읽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를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주거를 자율적으로 선택 통제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은 ‘시설화’이므로 이런 현상을 탈피하게 하는 일 곧 주거를 지원함으로써 당사자가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살지 자율적으로 선택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일은 ‘탈+시설화’라고 해야 합니다.

참조 : 25쪽 ‘탈시설화는 입주자의 주거를 다양하게 지원하기’

20. Processes of deinstitutionalization should be l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ose affected by institutionalization, and not by those involved in managing or perpetuating institutions. They should avoid practices that violate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including renovation of settings, adding more beds, replacing large institutions with smaller ones, renaming institutions, or applying standards such as the ‘principle of least restriction’ in mental health legislation.

Deinstitutionalization 과정은 institutionalization 대상자(시설 입주자)를 포함한 장애인들이 주도해야 한다, 시설 운영이나 시설 영속화에 관련된 사람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

→ 시설 입주자 본인이 탈시설 과정을 주도하게 도울 수 있고 그렇게 돕는 일을 주도해야 할 주체는 시설 운영진이고 시설 사회사업가입니다. 입주자가 잘 준비해서 탈시설하게 돕는 일은 시설의 고유 업무이고 오래전부터 이미 많은 시설이 해 오던 일입니다.

23. A core element of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is that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he support, based on their own choices, that they may require to carry out daily activities and participate in society. Support should be individualized, personalized and offered through a

variety of options. Support encompasses a wide range of formal assistance, as well as informal community-based networks.

독립생활 및 지역사회 포함(?)의 핵심 원리는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선택에 기초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상의 활동들을 수행하고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화하여 개인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다양한 선택지들을 두고 지원해야 한다. 공식적 도움뿐 아니라 비공식적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광범위하게 지원해야 한다.

→ 시설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시설 사회사업은 본디 입주자를 이렇게 지원합니다.

당사자의 선택에 기초하여 지원합니다. 당사자가 자기 일상생활을 하게 돕고 사회에 참여하게 돕습니다. 개별화하여 지원합니다. 다양한 대안들을 두루 살펴서 선택 활용하게 돕습니다. 정부나 복지기관 등의 공식 자원뿐 아니라 돌래 사람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비공식 자원도 두루 찾아 활용하게 돕습니다.

이런 게 독립생활 및 지역사회 포함(?)의 핵심 원리인지는 모르겠으나 탈시설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시설에서는 이렇게 지원할 수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 시설과 시설 사회사업을 오해했거나 현상과 본질을 혼동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8. Definitions of community-based support services, including in-home, and other support services, and personal assistance, should prevent the emergence of new segregated services, group housing – including ‘small group homes’ – sheltered workshops, institutions for the provision of ‘respite care’, transit homes, day-care centres, or coercive measures such as community treatment orders are not community-based services.

소규모 그룹홈과 데이케어센터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가 아니다.

→ 그룹홈도 데이케어센터도 마땅히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통합 서비스를 위주로 해야 하는 곳입니다. 사회사업은 어디서

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는 탈시설과 상관이 없고 분리 서비스는 시설의 본질과 상관이 없습니다. 서비스 방식일 뿐입니다. 탈시설한다고 분리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시설이라고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룹홈에서도 데이케어센터에서도 시설에서도 사회사업은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일반 수단을 이용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32. States parties should ensure safe, accessible and affordable housing in the community, through public housing or rental subsidies, for persons leaving institutions. Aggregating persons leaving institutions into communal housing arrangements or in assigned neighbourhoods, or bundling housing with medical or support packages, are incompatible with articles 19 and 18 (1) of the Convention.

Housing should be neither under the control of the mental health system or other service providers that have managed institutions, nor conditioned on the acceptance of medical treatment or specific support services.

시설을 떠나는 사람을 공동주택이나 할당된 지역 또는 지원 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주택에 모여 살게 하는 것은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맞지 않다. 시설을 운영한 적이 있는 서비스 제공자가 주택을 관리해서는 안 되고 특정 지원 서비스를 받는 조건이어도 안 된다.

→ 지원주택 사업은 공동주택이나 (주택공사 따위로부터) 할당받은 곳 또는 지원 기관이 딸린 주택에 모여 살게 하지 않습니까? 기존 시설 법인이 수탁 운영하지 않습니까?

37.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live in the community, and deciding that some people cannot live

independently and should stay in institutions is discriminatory.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살 권리가 있다, 어떤 사람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으니 시설에 살아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차별이다.

→ 참조 : 66쪽 ‘권리와 탈시설이 무슨 상관인가요?’

① 시설 주택 입주자도 지역사회에서 삽니다.

시설 주택도 지역사회 주택이니 지역사회에 사는 것이고, 지역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하여 생활하니 지역사회에서 사는 겁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자체가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참조 : 55쪽 ‘지역사회가 탈시설과 무슨 상관?’

② 하필 이런 걸 ‘차별’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게 차별이라면, 시설에서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것, 시설에는 독립생활하게 도울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 그래서 시설에서 나가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 이런 건 차별이 아닌가요?

어느 시설 기관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게 잘 돕기 때문에 그 시설 주택에 살겠다는데, 그 시설 주택에 살면 안 된다고 결정하는 건 차별이 아닐까요? 이런 것이야말로 차별이 아닐까요?

시설 주택이든 지원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거기에 살라거나 살지 말라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억압적이고 차별적이지 않습니까?

시설 기관이든 다른 기관이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게 돕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돕는 기관, 더 잘 돕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선택지를 한정하는 것 자체가 차별 아닌가요?

일반논평 5호와 탈시설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1) 시설, 탈시설, 시설화, 탈시설화, 자립, 자립생활, 지역사회, 지역사회 통합, 이런 핵심 용어의 개념이 없거나 모호하거나 어지럽습니다.

2) 일반논평 5호는 장애인권리협약 19조에 대한 논평이고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일반논평 5호를 보완하는 것이었는데, 협약 19조와 일반논평 5호 및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연결하는 논리가 없습니다.

협약 19조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이 탈시설과 무슨 상관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탈시설하지 않으면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이 안 된다거나 탈시설하면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이 된다고 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3) 정책 철학 인력 자원 따위가 부적절하거나 부족하면 어디서나 생길 수 있는 현상을, 시설에서만 생기는 현상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시설은 다 그럴 수밖에 없다거나 다 그렇다는 듯 이야기합니다.

시설의 본질과 시설 사회사업을 오해했거나 편견에 사로잡힌 건 아닌가 싶고, 독선에 빠져서 짐짓 왜곡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4) 이처럼 개념이 모호하고 논리가 부실한데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형세입니다.

일반논평 5호나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절대시하듯, 비판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듯, 그렇게 역설하는 일도 있습니다.

일반논평 5호나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내세우면서 지원주택을 수용하고 지원주택은 시설과 다르다고 강변하는 일도 있습니다. 궤이하다고 할 일인지 덕분에 지원주택이라도 건지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탈시설 주장에 관한 비판과 질문

1. 시설을 없애야 한다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생활이 목적이라면 어디서든 그렇게 도우라 할 일이지 시설을 없애라 할 게 아닙니다.

시설 주택의 위치가 문제라면 옮기라 할 일이지 시설을 없애라 할 게 아닙니다.

밀집 주거 집단 주거가 문제라면 분산 주거 단독 주거로 바꾸라 할 일이지 시설을 없애라 할 게 아닙니다.

인력 부족이 문제라면 인력을 더 배치하라 할 일이지 시설을 없애라 할 게 아닙니다.

시설 운영 행태나 지원 방식이 문제라면 고치라 할 일이지 시설을 없애라 할 게 아닙니다. 인권 침해나 비리가 문제라면 처벌하라 할 일이지 시설을 없애라 할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구실로 시설을 없애야 한다 함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시설을 없애야 한다 하려면 그에 걸맞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탈시설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문헌이 있습니까?

주거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 지원 인력을 늘려야 하는 이유, 운영 및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 따위의 변죽이나 울리는 문헌 말고...

2. 지역사회가 탈시설과 무슨 상관?

탈시설을 말하면서 지역사회를 운운하곤 합니다. 미주 8 : 사례

지역사회 개념이랄 게 없고 특정하여 가리키는 바도 없는 것 같은데... 그저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느니 지역사회로의 이전이니 전환이니 정착이니 합니다. 시설 주택은 지역사회 주택이 아니고 시설 주택 입주자는 지역사회에 살지 않거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시설 주택도 지역사회 주택입니다. 시내에 있든 교외에 있든, 한집 한 방에 몇 명이 살든, 공간 세간을 따로 쓰든 함께 쓰든, 시설 주택도 그 동네 그 마을 그 지역의 여느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주택입니다. 여느 주택 가운데 공간이나 세간을 여러 가구가 얼마쯤 공유하는 주택도 있습니다. 방만 따로 쓰는 ‘기숙사형 생활주택’이 그러하고 한집 한 방에 서로 다른 가구들이 동거하는 ‘공유주택’이 그러합니다.

시설 주택도 다양한데 어떤 형태이든 지역사회 주택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기관의 주소지 안에 있는 주택도 밖에 있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주택입니다. 미주 9 : 시설은 주택이 아니다?

시설 주택 입주자도 지역사회에서 삽니다. 시설 주택도 지역사회 주택이니 지역사회에 사는 것이고 지역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하여 생활하니 지역사회에서 사는 겁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자체가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법 제58조 이와 같이 입주자의 주거가 이미 지역사회에 있는데, 지역사회로 전환한다 할 수 있을까요? 입주자의 삶과 사람살이가 이미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사회로 전환한다 할 수 있을까요?

주거를 공유주택에서 지역사회로 이전한다? 기숙사형 생활주택에서 지역사회 주택으로 전환한다? 집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정착한다? 집을 없애고 지역사회에 살게 한다? 생수를 물로 대체한다거나 샘물 수돗물 대신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불성설 아닌가요?

3. 시설은 안 된다는 근거나 논리가 무엇인가요?

1) 경희대학교 박OO 교수의 주장

“시설의 규모를 줄이고 운영 행태를 개선하고 서비스 방식을 바꾸는 노력으로는 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 탈시설해야 한다.”

출처 : 201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시설 규모를 줄이고 개선하는 노력으로는 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2)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OO 활동가의 주장

“이제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일상을 갖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그거는 운영사업자가 뭐 못해서 직원들이 뭐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처 : 2021년 11월 10일 [토론](#) 영상 16:44~

어떤 구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3) 장애인법연구회 정OO 변호사의 주장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탈시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나 질적 수준에 상관없이) ‘시설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해결책도 아니고, 의료·교육·재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절한 형태도 아니다.’ 이는 시설에서 본질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자립적 생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출처 : 비마이너 2022년 5월 12일자 [기사](#)

본질적으로 그렇다느니 구조적으로 그렇다느니 하는데, 시설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구조가 그러한지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렇다고만 하니 갑갑합니다.

4. 시설화가 문제라면서 왜?

1) 경희대학교 박OO 교수의 주장

“시설의 문제점은 시설적 문화로부터 비롯되는 시설화가 핵심이다. 「2012 유럽 탈시설화 공동기준」은 시설적 문화가 시설화를 촉발시키므로 탈시설화정책은 시설적 문화 제거에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출처 : 인권위 2017. 11 장애인 탈시설 방안 연구 [보고서](#) p.12

2)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OO 활동가의 주장

“UN 장애인탈시설정책가이드라인 : 대규모 거주시설은 물론 소규모 그룹홈이나 가정이다 할지라도 시설화된 환경요소를 지닌다면 자립 생활환경이라 볼 수 없음. 즉, 시설화된 환경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것”

“UN이 이야기하고 있는 탈시설은, 시설화된 환경을 없애는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시설화된 환경 요소를 없애는 게 탈시설이라고 국제사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처 ; 더숨99지원센터 제3회 콜로키움 [토론](#) 영상 9:49 ~

미주 10 : 시설화한 환경 요소 제거 vs. 탈시설

3) 장애인법연구회 정OO 변호사의 주장

“탈시설에서의 시설은 특정 형태의 물리적 건물이나 조건이 아니다. 생활 방식과 일상생활에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자율성이 부족한 모든 환경이 ‘시설’ 또는 ‘시설화된 환경’이다.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동참이 어렵다면 대규모 거주시설, 소규모 그룹홈, 심지어 혼자 사는 집도 ‘시설’ 또는 ‘시설화된 환경’에 해당할 수 있다.”

출처 : 비마이너 2022년 5월 12일자 [기사](#)

시설화가 문제라면서 왜 ‘탈+시설화’를 주장하지 않고 ‘탈시설’을 주장할까요? 탈+시설화하도록 법과 지침을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고 그렇게 지도 감독하라고 요구하는 게 순리가 아닐까요?

5. 탈시설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1) 사회사업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① 저마다 각각 자기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자기 삶’을 살게 돕고, 자기 일에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습니다.

②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과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수단을 이용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어울리는 관계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하거나 하면 좋을 일 ‘사람 구실’ 잘 하며 살게 돕습니다.

③ 입주자 개개인이 각각 독립가구로서 독립생활하게 돕습니다.

④ 주거를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당사자의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의 필요에 따라 주소지 외의 곳에 일정 기간 머물러 지내거나 일시 체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겁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든 지원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전담 지원 기관의 사회사업은 이렇게 합니다.

시설에서 이렇게 돕지 않는다면 탈시설해도 이렇게 돕는다는 보장이 없고, 시설 밖에서 이렇게 도울 수 있다면 시설이라고 이렇게 돕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에도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은 대상자이고 필요한 도움이 여전한데, 탈시설 전후의 지원에 차이가 있다면, 그야말로 차별하는 행위일 공산이 큼니다. 어디에 살든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원은 탈시설한다고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원은 늘려야 많아지는 겁니다. 탈시설하든 하지 않든 필요하면 늘려야 합니다.

2)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생활에 차이가 있을까요?

① 지역사회 통합

지역사회 통합의 실체는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하며 지역 주민 시민으로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겁니다.

탈시설한다고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탈시설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시설 입주자도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지원하기 나름입니다.

② 자립생활

자립생활은 ‘자력으로써 하는 생활’입니다. 자립생활은 자력이라는 수단에 달렸습니다. 사는 곳에 달린 게 아닙니다.

독립생활은 ‘따로 하는 생활’입니다. 독립생활은 생활의 자치에 달렸습니다. 주거의 위치나 형태, 동거 여부나 자립 여부에 달린 게 아닙니다. 독립 주거가 아니어도 독립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나가도 각종 지원에 의존하니 자립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체적으로 산다는 보장도 없고 독립생활을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시설에서도 자립생활은 어렵습니다. 다만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자주생활이나 저마다 각각 독립 가구로서 따로 생활하는 ‘독립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지원하기 나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자주·독립)생활은 탈시설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 살든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도와야 합니다.

3) 주거가 좋아질까요?

탈시설 전과 후의 주거, 예컨대 기존 시설 주택(이하, 그냥 '시설 주택')과 지원주택은 집단적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① 시설 주택도 제각각이고 지원주택도 제각각입니다.

시설 주택이 신축 건물이고 지원주택이 낡은 건물이거나, 시설 주택이 아파트이고 지원주택이 빌라이면 어떨까요?

어떤 시설 입주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탈시설하여 지원주택이라는 빌라에 살게 된다면 주거가 좋아진다고 할까요?

어떤 시설 입주자가 직장에서 가깝고 여러 지인과 좋은 이웃이 있는 동네에 마당이 있는 70평짜리 단독주택을 얻어 별가살이를 하고 있는데, 탈시설하면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주택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② 주택 선택 기준도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주택을 고를 때 고려하는 점이 주택의 종류뿐일까요?

직장 학교와 가깝거나 다니기 좋은 곳, 정든 곳 익숙한 곳 조용한 곳 풍광 좋은 곳, 아는 사람이 가까이 사는 곳, 좋은 이웃이 있는 곳... 이런 조건이 주택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③ 분산 주거, (독채·독방) 단독 주거도 지원하기 나름입니다.

여러 시설에서 이미 얼마쯤 지원하고 있고 인력과 예산을 추가하는 만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법과 지침에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면 모든 시설이 할 수 있습니다. 이리므로 분산 주거, 단독 주거 여부도 탈시설 전과 후의 차이라 할 게 아닙니다.

주거는 탈시설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주거는, 주거를 개선해야 좋아지는 겁니다. 탈시설하든 하지 않든 주거를 개선해야 합니다.

4) 자유로워질까요?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주로 ‘보호·감독’ 행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호·감독 행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탈시설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기본적 보호에 한정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이를 근거로 책임을 묻곤 합니다. 법과 상관없이 그냥 보호·감독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사고 뒷일이 사람을 힘들게 지치게 질리게 합니다.

이런 시비나 책임을 면피하려다 보면 아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나치게 ‘보호’하게 됩니다. 보호 행위는 사실상 간섭 통제 구속에 가까워지고 자유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지원 기관이나 지원자에게 사실상 무제한의 포괄적 보호·감독 의무를 지우는데, 지원주택이라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포괄적 보호·감독 의무를 없애고 입주자마다 각각 ‘보호·감독이 필요한 경우’와 ‘최소한의 필수 보호·감독 조치’를 계약서에 명기하여 그 이상의 보호·감독 행위를 금해야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이나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기관이나 지원자에게 보호·감독 의무를 지우는 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설 밖에서 ‘보호·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시설이라고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탈시설한다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보호·감독의 한계를 정하기 나름이고 지원하기 나름입니다.

미주 11 : 자유의 선결 조건은 ‘탈 보호’입니다.

요컨대, 탈시설로써 좋아질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좋아지는 것이 있다면 탈시설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개선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겁니다. 시설이라고 개선하지 못할 것이 무엇일까요?

6. 탈시설 전과 후의 삶이 다르다고요?

이하 질문들은 2021년 11월 10일 더숨99지원센터 주최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콜로키움'에서 발표하신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의 [토론](#) 영상을 보고 해당 게시판에 댓글로 쓰고 메일로도 드린 질문들입니다. ([원문](#))

탈시설 전과 후의 삶은 바뀔까? 시설거주인과 자립한(재가) 장애인의 권리와 서비스의 차이

- 집단서비스(직원 1인이 4명 이상 지원) → 개인별서비스
- 주택(주거공간) 점유권 NO → YES
- 하나의 서비스공급자
→ 이용서비스마다 공급자의 선택
- 서비스의 권한(정부는 지원금을 누구에게 주나) 공급자중심 → 소비자 중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 시설거주인의 일과 및 규율 획일화 → 개인마다 다른 하루일과
- 시설 1호실 당 평균입소인 4.7인
→ 개별화된 주거공간과 룸메선택권

'탈시설 전과 후의 권리와 서비스의 차이' [토론](#) 영상 11:33~

같은 사람이라도 탈시설 전과 후의 권리에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일 상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동일한데, 같은 대상자인데, 탈시설 전과 후 의 서비스에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탈시설 전과 후의 차이라고 열거하신 여섯 가지 모두 탈시설로써 생기는 차이가 아닙니다. 사는 곳에 따라 차별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생길 수 있는 차이일 뿐입니다.

시설에 대한 차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차이, 탈시설의 본질로 인한 차이를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집단 서비스 (직원 1인이 4명 이상 지원) → 개인별 서비스

개인별 서비스는 탈시설 여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지원 인력에 달린 문제입니다. 지원해 줄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개인별 서비스 제공 여부는 탈시설 전과 후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원 인력을 적게 배치하는 데서 생기는 차이일 뿐입니다.

시설 주택 입주자는 직원 1명이 4명 이상 지원하다 보니 개인별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지원 인력을 더 배치해서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요구할 일 아닌가요?

2) 주택(주거 공간) 점유권 NO → YES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시설 주택 입주자에게도 점유권이 있습니다. 시설 주택의 방실도 입주자가 적법하게 점유한 주거 공간입니다.

미주 12 : 점유권

주거 공간의 점유권은 탈시설과 상관없는 권리입니다. 탈시설해야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설 주택 입주자에게 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점유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일 아닌가요?

13:08 “점유의 개념에서 내 집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을 키운다든지, 집에 애인이든 짝꿍이든 누군가가 드나들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다 보장되어야 한다, 내 집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 이런 개념의 점유권이 있고 없음이 탈시설과 무슨 상관인지요? 탈시설하든 하지 않든, 시설 주택에 살든 일반 주택에 살든, 어디에 살든 거주공간에 대해 이런 개념의 점유권을 보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3)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 → 이용 서비스마다 공급자의 선택

시설에 산다고 어느 하나의 공급자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탈시설한다고 서비스마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달린 문제입니다.

발제 영상에서 정선옥 님을 지원한 사례가 그렇습니다. 부모교육 기관, 미용 서비스 업체, 신앙생활 기관, 평생학습 기관, 취미활동 기관, 모두 당사자가 선택했습니다.

탈시설하든 하지 않든, 어디에 살든 이렇게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탈시설 여부로써 이렇게 차별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시설 주택 입주자에게 하나의 공급자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시설 주택 입주자라고 해서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시설 주택 입주자가 다양한 공급자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 방식을 바꾸자고 할 일 아닌가요?

4) 서비스의 권한 : 공급자 중심 → 소비자 중심

서비스의 권한이 공급자 중심이어서 문제라면, 그렇다면 시설에서도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자고 할 일 아닌가요?

16:15 “외국에서의 변화는 꼭 탈시설정책이 아니어도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공급자 위주의 어떤 운영을 해 왔던 것을 소비자에게 권한을 좀 넘기는 방식으로 변화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꼭 시설 탈시설의 논쟁을 넘어서 우리 복지 변화 발전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저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좀 더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 시설 탈시설 논쟁을 넘어 그렇게 발전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도 이것이 탈시설 전과 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5) 거주인의 일과 및 규율 획일화 → 개인마다 다른 하루 일과

16:44 “시설 거주인의 일과가 어떤 시설은 ‘우리 시설은 다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글썬요, 제가 간여하고 있는 시설은 지금 두 개 시설에 100명쯤 안 되게 이제 지금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하루 일과는 거의 동일합니다. 8시에 출근하는 직원에 맞춰서 아침 식사를 하고 6시에 퇴근하는 직원에 맞춰서 저녁 식사를 그 전까지 끝내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일상을 갖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그거는 운영사업자가 뭐 못해서 직원들이 뭐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 운영사업자의 운영 방식이나 직원들의 지원 방식에 상관없이 시설이라면 다 그럴 수밖에 없다? 시설의 구조 때문에 입주자들의 일과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어떤 시설에서는 입주자마다 일과가 다르고 선생님께서 간여하시는 시설에서는 입주자의 일과가 거의 동일하다? 입주자의 일과는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따라 입주자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양립할 수 없는 설명 아닌가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일과의 개별성, 이는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달린 문제입니다.

시설 주택 입주자의 일과가 획일적이라면, 일과를 저마다 각각 자율적으로 하게 지원하자고 할 일 아닌가요?

6) 1호실 당 평균 입소인 4.7인 → 개별화된 거주공간과 룸메이트권

호실 당 몇 명이 거주함이 좋은가는 지원 수요와 지원 인력에 달린 문제입니다. 탈시설 여부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개별화된 거주공간과 룸메이트 선택권 유무는 탈시설과 상관없습니다. 개별 공간과 룸메이트 선택권 제공 여부에 달린 문제입니다.

시설 주택 입주자에게 개별화된 거주공간과 룸메이트 선택권이 없다면, 그것을 제공하라고 할 일 아닌가요?

7. 권리와 탈시설이 무슨 상관인가요?

1) “사회복지가 권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선옥 씨의 권리, 나의 권리가 모두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권리만큼 다같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줄을 잘 서서 어느 시설에 가면 이런 삶, 어느 시설에 가면 저런 삶, 어딜 가면 아주 더 이상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탈시설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운동을 해 왔습니다.

좋은 시설을 만드는 일보다는 각 개인의 권리를 신장하는 일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탈시설 운동을 했습니다.” 토론 영상 1:54~

① 권리가 같아야 한다는 생각과 탈시설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탈시설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고 탈시설하면 권리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권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탈시설하든 하지 않든, 어디에 살든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② 어디에 있든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면, 탈시설 운동이라니 뜬금없어 보입니다.

어디에 있든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시설에 살아도 같은 권리를 누리게 하자는 운동을 하실 것 같은데 탈시설 운동을 하신다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탈시설 운동을 하신다는 말씀이 '장애인도 권리를 누려야 한다, 단, 시설 주택에서 퇴거하면?' 탈시설하면 권리를 보장하고 탈시설하지 않으면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요?

2) “제 포지션은 권리를 확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권리를 어떻게 하면은 모두가 누리게 할 건가에 있다.

어느 공급자에 상관없이 그 권리가 국가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토론 영상 25:25~

① 포지션이 모두가 권리를 누리게 하는 데 있다는 것과 탈시설이 무슨 상관입니까?

공급자에 상관없이 국가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탈시설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권리를 누리게 하는 데, 국가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데, 탈시설 여부에 따라 차별하겠나? 탈시설하지 않으면 권리를 누리게 하지 않겠다, 국가의 권리로서 보장되게 하지 않겠다? 설마 이런 뜻은 아니겠지요?

② 모두가 권리를 누리게 하는 데 포지션이 있다면, 공급자에 상관없이 국가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시설 주택에 거주하든 지원주택에 거주하든,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누리게 하고 국가가 그 권리를 보장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프리wel 향유의집 기관이 지원하든 프리wel 지원주택센터가 지원하든 공급자에 상관없이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누리게 하고 국가가 그 권리를 보장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프리wel이 지원주택 빌라에서 지원하든 나눔세상이 척동빌라와 그린 빌아파트와 현대아파트와 주공아파트 등의 시설 주택에서 지원하든, 어떤 법인이 어떤 주택에서 지원하는가에 상관없이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누리게 하고 국가가 그 권리를 보장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원 기관에 상관없이, 탈시설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누리게 하고 국가가 그 권리를 보장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3) “탈시설이나 장애인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 자기가 속한 조직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제공해야 될 주거 서비스라든지 사회 서비스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그 분이 어디로 가든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좀 내용을 바라보고 토론했으면 좋겠다.” [종합 토론](#) 영상 7:41~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기가 속한 조직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게 하자, 어디로 가든지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게 하자.’는 말씀 그대로 선생님이 속한 조직 ‘프리웰’이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보편적으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하실 수는 없을까요?

프리웰 향유의집에 머물든 프리웰 지원주택으로 이주하든 어디서든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설 주택에 살든 지원주택에 살든 어디에 살든 보편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숨99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든 향유의집 기관의 지원을 받든 프리웰 지원주택센터의 지원을 받든 어떤 법인이 운영하는 어떤 기관의 지원을 받든 보편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탈시설하든 하지 않든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8. 탈시설 왜 해야 하나?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요?

1) 슬라이드([토론](#) 영상 9:49 ~)의 본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슬라이드의 제목은 “탈시설 왜 해야 하나?”인데, 본문에는 ‘UN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가이드라인’이라면서

“대규모 거주시설은 물론 소규모 그룹홈이나 가정이라 할지라도 시설화된 환경 요소를 지닌다면 자립생활 환경이라고 볼 수 없음. 즉 시설화된 환경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라고 쓰셨습니다.

“탈시설 왜 해야 하나?” 했으니 '이러저러하기 때문이다' 해야 할 텐데 슬라이드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2) 구두 설명에도 답이 없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놓고 구두로 하신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탈시설 왜 해야 하나? 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20년간 이 질문을 받았어요. 왜 탈시설을 해야 하나고. 저는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장애인이든 누구든 시설로 가지 않고 집에서 살 수 있는 사회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탈시설 왜 해야 하나? 장애인이든 누구든 시설로 가지 않고 집에서 살 수 있는 사회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실하게 답변한 것이란 말씀입니까? 20년간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씀입니까?

이제라도 제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20년간 받아 오셨다는 질문이고 또 선생님 스스로 슬라이드 제목으로 쓰신 질문인 “탈시설 왜 해야 하나?” 이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9. 장애인이라고 왜 시설에 살아야 하나요?

토론 영상 9:44 ~ 슬라이드 제목 : ‘장애인이라고 왜 시설에 살아야 하나?’

1) 장애인은 시설에 살아야 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정부가 그러던가요? 시설 운영자나 사회사업가가 그러던가요? 장애인복지계에서 그러던가요, 사회복지계에서 그러던가요?

실제로 장애인이라고 다 시설에 사는 게 아니잖습니까?

등록 장애인 300만 명 중에 3만 명만 시설에 사는 현실인데, “장애인이라고 왜 시설에 살아야 하나?” 이렇게 물으시다니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장애인은 대부분 시설에 살고 있는가 보다.' 하지 않겠습니까?

발바닥 행동 소개 영상과 소개 글에서도

“탈시설운동은 장애인이 무조건 시설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깨고자 하는 운동”이고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활동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깨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통념, 장애인이 시설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통념, 이런 통념이 있다는 겁니다. 장애인은 시설에 들어가야 하고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통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통념이 있습니까? 통념이 이러합니까?

2) 장애인은 시설에 살면 안 됩니까?

①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일상적으로 지원해 줄 사람이 곁에 없다면, 그래서 전담 지원 기관이 딸린 시설 주택에 살고 싶다고 하면, 그런 시설 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상적으로 지원해 줄 사람이 있더라도, 어떤 시설 기관이 사람답게 살게, 사람 사는 것같이 살게, 입주자의 삶과 사람살이를 잘 지원한다면, 그래서 그런 기관이 전담 지원하는 시설 주택에 살고 싶다고 하면, 그런 시설 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장애인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 장애인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게 하고 거주하지 못하게 해도 될까요? 그래야 할까요?

② 시설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게 하고, 시설 주택에서 나가라 한답니다. 주거를 선택할 권리를 이렇게 제한해도 될까요? 장애인이라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해도 될까요?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시설 주택에 거주할 자유, 시설 주택으로 이전할 자유를 제한하려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리라 하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장애인이 시설 주택에 입주하거나 계속 거주할 자유를 누리게 하면 국가안전·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해친다고 할 수 있을까요?

10. 무엇을 탈시설이라 하시는지요?

탈시설 왜 해야 하나? 장애인이라고 왜 시설에 살아야 하나?

▪ UN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가이드라인

“대규모 거주시설은 물론 소규모그룹홈이나 가정이다 할지라도 시설화 된 환경요소를 지닌다면 자립생활환경이라고 볼수 없음. 즉, 시설화된 환경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것”

제목에 “탈시설 왜 해야 하나?” 했으니, 본문에 제시한 것은 당연히 탈시설해야 하는 이유이겠지요. 그래서 ‘시설화된 환경 요소를 지님’ 이것이 탈시설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하시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설명을 하셨습니다. 탈시설의 '개념'이 이렇다는 겁니다. UN과 국제사회는 이것을 탈시설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UN이 이야기하고 있는 탈시설은, 시설화된 환경을 없애는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시설화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UN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이런 시설화된 환경 요소를 없애는 게 탈시설이라고 국제사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 영상 10:33 ~

UN 탈시설정책 가이드라인 시설화된 환경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것

▪ 시설화된 환경 (institutionalized settings)의 요소

- 타인과의 지원 공유(집합적 지원)
- 지원인에 대한 선택권 부재 혹은 제한
-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로부터의 고립과 분리
- 일상적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권 부족
- 동거인에 대한 선택권 부족
- 개인의 의지 및 선호와 관계없는 경직된 일상
- 특정한 통제 하에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획일적인 집단 활동
- 서비스 제공에서의 부정주의적 접근
- 생활 방식에 대한 감독

시설화된 환경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면 ‘탈시설화’라고 해야 할 텐데 ‘탈시설’이라고 한다?

선생님께서도 그런 개념으로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쓰시는지요? ‘시설화한 환경 요소를 제거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것 같지는 않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토론 영상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탈시설 개념은 ‘시설 기관과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 주택에서 퇴거하기’ 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원주택 따위로 옮기기’쯤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선생님의 탈시설 개념을 온전한 문장으로 똑떨어지게 정의해 주시겠습니까?

※ 마지막 줄은 ‘동일한 환경에 거주하는 장애인 수의 불균형’이지요? 이 기준에 따르면, 지원주택도 시설화된 환경 요소가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원주택으로 옮기는 것은 탈시설이 아니라 시설에서 시설로 옮기는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11. 이런 탈시설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나는 늙어서 내 집, 나의 동네, 내가 살던 곳에서 내가 친숙한 사람들과 살고 싶다.” 토론 영상 5:26~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시설이, 그 시설을 맡아 (10년 가까이) 운영해 온 법인이, 입주자를 ‘내 동네, 내가 살던 곳’으로부터 똑 떼어서 법인의 동네, 법인이 속한 곳으로 집단 이주시킨 일이 있습니다. 친숙한 사람들로부터 똑 떼어서 아는 사람 없는 곳, 낯선 곳으로 옮긴 일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입주자에게 ‘내 동네’라고 할 만한 동네가 없었고, ‘친숙한 사람들’이라 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동안 ‘내 동네, 친숙한 사람들’이 있게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니 더 나쁜 일이지요.

2019년 겨울에 경기도 김포에서 서울의 장안동, 오류동, 신정·신월동으로 입주자 32명을 집단 이주시킨 일, 2021년 봄에 시설을 폐쇄하면서 나머지 입주자들을 하릴없이 나가게 한 일,

그 곳에서 살아오는 동안 정든 이웃, 고마운 사람, 돌레 사람에게 작별 인사도 하게 돕지 않고 그냥 똑 떼어서 이주시킨 일,

입주자가 정붙이고 사는 지역사회가 있게, 곧 입주자가 ‘우리 동네’라고 여기는 곳과 친하게 어울리는 돌레 사람이 있게, 떠나기 싫을 만큼 정든 곳 정든 이웃이 있게, 이렇게 지원하지 않았거나,

입주자 나름대로 정붙이고 살아온 지역사회가 있었는데 입주자를 그 지역사회로부터 분리시켜서, 똑 떼어서, 법인의 지역사회로, 공급자 중심으로, 집단 이주시킨

2019년 겨울의 그 일, 2021년 봄의 그 일…

그 일을 어떻게 합리화할 수 있을까요?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12. 탈시설이 이런 건가요?

“저희 법인이 거주시설을 운영하다가 거주시설 중의 한 개소를 장애인 지원주택이라고 하는 형태로 변화를 시켜 드렸어요.” 토론 영상 17:44 ~

새 주거 시설은 지원주택이라는 이름의 사회주택이고, 지원주택센터라는 전담 지원 기관이 딸려 있고, 센터장 슈퍼바이저 코디네이터라는 직원들과 주거코치 활동지원사 따위의 추가 인력이 있고,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부속 시설이 있습니다.

지원주택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사회주택이고, 지원주택센터는 지원주택 입주자를 전담 지원하는 기관이고, 슈퍼바이저와 코디네이터는 사회재활교사와 생활재활교사에 해당하는 인력이고, 커뮤니티 공간은 프로그램실 따위에 해당하는 이용 시설입니다.

새 주거 시설인 지원주택을 기존 시설의 운영 법인이 수탁 운영하고 새 지원 기관인 지원주택센터 또한 기존 법인의 산하 조직입니다. 그 법인이 직영하던 사회주택의 입주자들을 그 법인이 수탁한 사회주택으로 집단 이주시키고 그 법인의 조직이 전담 지원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사회주택과 지원 기관의 결합체인 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거주시설, 그 시설입니다.

주택의 명칭이나 위치나 구조나 계약 명이나 동거 인원이 다르다고, 기관과 인력의 명칭을 바꾼다고, 인력을 추가하고 지원을 늘린다고, 그렇다고 시설이라는 정체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주거 시설과 지원 기관이 필요 없게 되는 것도 아니고 기능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설이 아니라는 시설로 바뀌는 것 외에 본질상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탈시설인가요?

2019년 ‘향유의집’ 입주자들을 지원주택으로 집단 이주시키고, 2021년 기존 주거 시설을 폐쇄하고 지원 기관을 해체한 사례를 두고 드린 질문입니다.

13. 좋은 시설 안 되더라고요?

“좋은 시설을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살 곳과 서비스를 잘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토론](#) 영상 3:26~

1)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요?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 온갖 시도를 해 보셨을 텐데,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 하신 일들의 기획, 실행, 평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련 문서를 공유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2) 좋은 시설?

좋은 시설이란 어떤 시설인지 실무에 당도록 구체화하셨는지요? 좋은 시설의 실체와 실현 방법을 정리한 자료, 실천 안내서 같은 게 있었는지요? 좋은 시설의 실상을 실무에 당도록 구체화하고 그 실현 방법을 안내했어야 그렇게 해 볼 수 있었을 테니까요.

미주¹³: 좋은 시설

3) 안 되더라고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못 만들었고 프리월드 산하 시설에서 못했으니 누가 어떻게 해도 만들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지나친 일반화, 지나친 비약 아닌가요?

안 된 것이 아니라, 되어야 할 것이 모호했던 건 아닌지요? 안 된 것이 아니라, 되게 할 방법을 모르셨던 건 아닌지요?

안 된 것이 아니라, 변변히 해 본 것이 없었던 건 아닌지요? 시도를 아주 안 한 건 아니라도 이렇다 할 시도는 안 한 게 아닌지요?

그게 아니더라도, “시설은 누가 어떻게 해도 안 돼.” 감히 이렇게 단정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14. 그동안 이렇게 해 오셨단 말입니까?

“탈시설 전과 후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토론 영상 19:57~

첫째 슬라이드에서는 “하루 일과를 자기가 결정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개인 일정에 따라 생활하고, 일자리를 통한 소득활동,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 나의 집” 이것이 탈시설 후의 변화라고 하였고

둘째 슬라이드에서는 “본인 옆에 본인을 전담해 주는 지원자가 상주하며 대화하고, 안전을 명분으로 한 불필요한 통제가 없고, 최종증을 이유로 지원되지 않았던 외출, 여행 등이 자유로움” 이것이 탈시설 후의 변화라고 하셨는데, 이런 게 탈시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슬라이드에서 탈시설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경한 발달장애인, 여성은 시설의 위치상 개인외출 불가해서 시설이 제공하는 외출 외에는 시설 안에서 생활했고, 중한 발달장애인, 남성 역시 혼자 외출이 불가하여 시설 안에서 생활했다고 하셨습니다.

최중증 발달 및 외상 장애인, 남성은 묶여 있거나 팔에 보조기를 착용하여 팔을 굽히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외출 불가, 자기 방에서 누워서만 생활했고, 최중증 발달 및 외상 장애인, 노인 여성도 이와 유사하게 생활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프리웰이 운영해 온 시설 아닌가요? 2013년부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가 프리웰의 이사장을 맡아 왔는데, 그동안 이렇게 운영하셨단 말입니까?

입주자의 일과를 기관이 결정하고, 기관이 정한 일정에 따라 생활하게 하고, 구직과 직장생활을 지원하지 않고, 타인의 방해를 방지한 채로, 누군가 옆에 있어 대화할 사람을 주선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통제하며 외출, 여행을 지원하지 않고...

이렇게 해 오셨단 말입니까? 10년 동안 입주자를 어떻게 지원하셨기에 탈시설 전과 후의 삶이 이토록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15. 이러자고 탈시설을?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사례

소득, 집, 서비스, 일자리, 낮서비스 이용하는 개인마다 다른, 각자의 삶

- 소득(서울시) : 생계급여 54만8천+장애연금 42만+주거급여 31만=월 127만8천원 / 탈시설정착금 1300만원(1회)
- 집 : SH공급 임대주택
- 활동지원서비스 : 활동지원서비스 국비+시비(탈시설추가 2년 120시간+중증 200시간+최중증 24시간 지원)
- 일자리(서울시) :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최중증도 참여), 일 4시간, 월 83만원
- 낮서비스 : 직업을 갖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 주간활동, 복지관 이용, 지역 문화센터, IL센터 활동 등 다양한 각자의 삶
-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날"을 위한 사람중심계획(PCP) 접근 방식

이 슬라이드([토론](#) 영상 17:44 ~)에 쓰시고 설명하신 것처럼,

장애인 지원주택을 임대받고

탈시설 정착금, 생계급여, 장애연금, 주거급여를 받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장애인주간센터, 장애인복지관, IL센터에서 낮서비스를 받고...

탈시설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게 지역사회에서 사는 건가요?

이런 게 지역사회 통합인가요?

이런 게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면 시설 입주자에게도 이런 주거, 이런 급여, 이런 서비스, 이런 기회를 제공하라고 할 일 아닌가요?

그나저나,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 공기는 깨끗하지요. 이 정도면 시원하고, 별도 많고.

근데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발바닥행동](#) 웹사이트 때문에 걸린 표어

사람답게 살고 사람 사는 것 같이 산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는 보이지 않고 이런저런 사회서비스(?)만 난무하는 것 같아 민망하고 씁쓸합니다.

미주 14 : 이렇게 못할 수도 있나요?

**탈시설화 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할 역할은?** **래디컬 헬프**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을 집단화해서 그들의 욕구를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행태로부터 근본적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 대신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배우고 일하고 건강하게 서로 맞닿으며 살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하는데 집중했다.”

→ 사회적 역할 강화, 자력화, 지역사회, 관계지향적 복지, 좋은 삶, 자산기반,

위기관리에서 벗어나
‘잘사는’, ‘좋은 삶’을 살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 것!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좋은 삶을 일구도록 할 것인가?”**

(힐러리 코탐, 2020)

래디컬 헬프 : [토론](#) 영상 24:45~

소개해 주신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 사례는 ‘래디컬 헬프’의 저자 힐러리 코탐이 비판하는 기존 행태, 래디컬 헬프의 정반대에 가까운 행태, 탈피 대상, 그 전형을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탈시설 방안 연구 보고서 비평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연구 - 201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1. 시설

본 보고서는 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보고서에서 말하는 ‘시설’은 장애인이 집단 또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복지시설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거주시설과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집단거주가 이뤄지는 복지시설. 11쪽

장애인이 집단 또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복지시설? 예시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그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일 뿐인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다 집단 또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곳이라는 듯, 장애인 거주시설은 독채나 독방에 따로 거주하게 하면 안 된다는 듯, 이렇게 정의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나저나, 집단 또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이 언제서? 지역사회 어느 주택 가운데도 그런 주택이 많이 있는데?¹⁾

1) 입주자를 집단으로 움직이며 단체 생활 시키는 행태라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주자를 집단으로 움직이며 단체 생활 시키는 시설이라면 탈피 대상 시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집단 또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시설이 곧 단체 생활 하는 시설 아니냐 한다면, 지나치게 일반화하거나 비약하는 겁니다. 집단 또는 공동으로 거주한다고 다 단체 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2. 탈시설

박숙경(2016)은 우리나라에서의 탈시설 개념을 둘러싼 용어 논쟁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관점은 탈시설을 느슨하게 광의로 개념화한다. 시설을 개선하고, 탈시설을 지향하는 일련의 과정과 대규모시설 보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탈시설화된 방식과 노력을 모두 탈시설 개념에 포함하며, 이 관점에서 ‘탈시설화(化)’란 표현을 선호한다.

두 번째 관점은 탈시설을 보다 엄격하고 좁게 개념화한다. 이 관점에서는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의 보편적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만을 탈시설로 개념화하며, ‘탈시설-자립생활’이란 표현을 선호한다. 15쪽

보고서는 탈시설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탈시설 개념을 둘러싼 용어 논쟁을 소개할 뿐입니다.

다만 보고서의 관점은 탈시설을 좁게 개념화하는 두 번째 관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 ① 기존시설을 소규모화하고 개선하는 과정은 시설적 문화와 시설화를 단절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탈+시설화 정책이 될 수 없다. 15쪽
- ②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동거인 3인 이상과 거주하는 그룹홈은 탈시설화가 아님. 179쪽

그런데, 지역사회의 보편적 주택은 어떤 주택일까요?

앞에서 시설을 ‘장애인이 집단 또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곳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지역사회 여부를 가리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보편적 주택은 ‘장애인이 집단 또는 공동으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가리킨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시설도 지역사회 주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의 보편적 주택에서”라고 할 수 없을 테니까요.

3. 탈시설화

1) 탈시설화 개념

13쪽. 시설화 : 시설화는 시설병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자극이 없이 단조롭게 반복되는 시설 생활로 인해 사람들이 꿈과 욕구,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178쪽, 탈시설화 개념 정의 : (시설이 아닌) 제약이 최소화된 지역사회의 일반 주택에서 (인간 존재와 삶에 필수적인) 개인의 자유, 자율성, 사생활을 보장받고 (이를 위한) 소득 및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자신의 연령대와 선호에 맞게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inclusion)되어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시설화와 탈시설화의 개념이 따로 놓입니다.

2) 탈시설화는 ‘탈+시설화’라면서?

15쪽. 탈시설화를 ‘탈시설+화’로 해석하고, 기존 소규모화 정책과 같이 기존 시설보호 정책을 개선하는 노력을 탈시설화라 주장하는 것은 ‘탈 + 시설화 = De + Institutionalization’의 용어 유래와 의미를 오해한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탈시설화에 관한 국내의 논쟁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제안하며, 탈시설을 ‘탈+시설화’로 사용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의 탈시설화정책은 시설화를 벗어나기 위해 첫째, 거주공간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전하고...

① 탈시설화는 ‘탈시설+화’가 아니라면서 탈시설화 정책은 시설 밖으로 이전하는 정책 곧 ‘탈시설+화’ 정책을 첫째로 꼽습니다. 시설화가 문제이고 탈시설화는 ‘탈+시설화’라면서 ‘탈시설 방안’이라는 보고서 제목에서부터 ‘탈시설, 탈시설’ 합니다.

② 탈시설화를 ‘탈+시설화’로 설명한 곳은 12~16쪽 ‘용어 및 주요 개념’ 편뿐입니다. 여기서만 ‘시설화’를 이야기하고 이후 다시는 이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탈시설화’는 ‘탈시설+화’ 곧 ‘시설에게 나오게 하기’로 읽어야 자연스럽게습니다. ‘탈시설화’ 자리에 15쪽의 ‘탈+시설화’ 개념이나 178쪽의 탈시설화 개념을 대입하여 통하는 문장이 있을까 싶습니다.

4. 논리

1) 이상한 논리

- ① 대전제 : 시설화가 문제다,
- ② 소전제 : 탈시설화는 ‘탈시설+화’가 아니고 ‘탈+시설화’이다.
- ③ 결론 : 탈시설해야 한다.

2) 근거 없는 전제

- ① 대전제 : 시설 문제는 시설적 문화로부터 비롯되는 시설화가 핵심이다.
- ② 소전제 : 시설의 규모를 줄이고 운영 행태를 개선하고 서비스 방식을 바꾸는 노력으로는 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③ 결론 : 탈시설해야 한다.

‘시설 규모를 줄이고 개선하는 노력으로는 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할 근거나 논리적 설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3) 전제와 다른 결론

보고서는 “2012 유럽 탈시설화 공동기준은 시설적 문화가 시설화를 촉발시키므로 탈시설화 정책은 시설적 문화 제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인용하고, ‘시설적 문화가 시설화의 원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탈시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고서의 논리를 정리하자면

- ① 대전제 : 시설화 현상이 있다.
- ② 소전제 : 시설적 문화가 시설화의 원인이다.
- ③ 결론 : 탈시설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가 난해합니다. 결론이 전제와 상관없어 보입니다. 전제는, 시설화라는 문제 현상이 있는데 시설적 문화가 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시설적 문화를 제거해야 한다.’ 해야 할 텐데 ‘탈시설해야 한다.’ 합니다.

5. 탈시설 성과

23~32쪽 ‘제3절. 탈시설 이후 사람들의 변화’에서 요약

15건의 비교 연구 가운데 10건이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을 정도의 좋은 결과를 보였거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기까지 이르지 못했다. 5건의 비교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탈시설 장애인들의 학업능력, 지역사회 생활능력, 사회적 능력 또한 절반 이상의 비교결과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외부에 대한 도전적 행동(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이나 사물에 대한 손괴)의 경우 탈시설장애인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완화되었다.

25건의 종단 연구 가운데 15건은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를 통해 적응행동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했다고 했다. 5건의 다른 연구들은 그러한 향상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3건의 연구는 탈시설 장애인의 적응행동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나빠졌다고 보고했고, 2건의 연구는 탈시설 장애인의 적응행동이 나빠지긴 하였지만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21건은 탈시설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변화에 관한 연구결과를 포함하고 있는데, 도전적 행동이 개선된 11건의 연구 가운데 4건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였고, 도전적 행동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8건의 연구 가운데 3건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했고, 2건의 연구에서는 탈시설 이후 도전적 행동의 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 이 정도의 성과로써 탈시설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시설화는 ‘자극이 없이 단조롭게 반복되는 시설 생활로 인해 사람들이 꿈과 욕구,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이라 했고 탈시설화는 ‘시설화를 벗어난 상태’라 했는데,

자극이 없이 단조롭게 반복되는 생활을 벗어났다거나 꿈과 욕구,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 기력을 회복했다는 성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3)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탈시설 전후 비교도 있을까요? ‘성과라 할 수 있는지 모르’ 저 정도의 차이라도 보일까요?

지원 내용과 지원 방식이 동일해도 탈시설만 하면 그런 차이가 생길까요? 지원 방식에 의한 차이보다 더 클까요?

4) 이런 비교 연구와 종단 연구 성과로 탈시설이 필요하다 하니...

① 비교 연구

대규모 시설 거주자와 그룹홈 거주자를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룹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할까요?

보고서는 ‘현행 그룹홈,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등 중간단계 주거의 수와 이용기간 축소’, 그리고 ‘시설이 운영하는 체험홈 설치 제한’을 정책 과제로 제시합니다. 218쪽, 259쪽

② 종단 연구

시설 계속 거주자가 종단 연구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면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 할까요?

시설 입주자가 그룹홈 거주를 통해 적응행동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면 그룹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할까요?

보고서는 ‘기존 시설 폐쇄’를 추진 원칙으로 170쪽, ‘신규 시설 설치 제한, 시설 폐지 및 폐쇄’를 정책 과제로 제시합니다. 249~261쪽

참조 : 94쪽 ‘탈시설 장애인 종단 연구와 시설 장애인 종단 연구를 [비교](#)한다면?’

6. 탈시설화 정책의 철학?

탈시설화정책의 핵심적 철학. 166쪽

탈시설화정책은 시설보호정책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그로써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와 인간발달을 이룰 기회를 억압해온 제도적 차별이라는 점에 대한 인정과 성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을 의도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

누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의도로 시설이나 시설 정책을 만들었을까요?

설립자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의도로 시설을 만들었을까요?
정부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의도로 시설 정책을 만들었을까요?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가 장애인을 의도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할까요?
감독관청이 장애인을 의도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할까요?

2) 시설보호정책이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와 인간발달을 이룰 기회를 억압해 왔다?

시설 정책이 다 보호 정책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와 인간발달’은 지원하기 나름이지 사는 곳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에 산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탈시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참여든 인간발달이든 탈시설 여부에 달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지나친 보호 정책, 지나친 보호 행위가 ‘사회참여와 인간발달을 이룰 기회를 억압’ 한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보호 정책을 바꾸고 지나친 보호 행위를 금지하자고 해야 자연스러운 텐데 탈 보호 이야기는 생략하고 그냥 탈시설로 비약하니 뜬금없습니다.

7. 탈시설화 정책

정책 과제. 173~283쪽

1. 당사자 참여 및 개인별 지원 체계 구축
2. 소득 및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
 - ① 소득 지원
 - ② 주거 지원
 - ③ 활동 지원
 - ④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 ⑤ 직업 및 주간활동 지원
 - ⑥ 관계 및 심리 지원
3. 입소 예방과 신규 시설 설치 제한, 시설 폐지(폐쇄)
4. 인력 개발 및 지원, 가족 등 비공식 돌봄 제공자 지원, 모니터링과 이해 증진

이 보고서가 내놓은 정책은 한마디로 ‘탈시설’ 문구를 넣어 편집한 일반 장애인복지 정책들입니다.

신규 시설 설치 제한과 시설 폐지 외에 탈시설 정책이랄 게 없습니다. 시설 안과 밖을 차별할 정책도 없습니다. ‘탈시설 장애인’ 자리에 ‘시설 장애인’을 대입해도 거의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시설 사회사업으로 이미 얼마쯤 그렇게 하고 있고, 예산과 인력을 추가하는 만큼 확대 개선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일반 장애인복지 정책들을 제외하면, 이 보고서가 마련했다는 정책의 실체는 한마디로 ‘분산 주거, 단독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마저 실은 유사 시설로 전환하는 정책에 불과합니다.

399쪽짜리 이 보고서에서 탈시설 정책을 추리면, ‘기존 사회주택 대신 새로운 사회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뿐입니다.

8. 시설과 활보

1) 시설

"21살 때 가족에게 부담주지 않으려고 시설에 들어갔어요. 시설 들어올 때 '죽어서 나간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그렇게 맘먹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1달 만에 나왔어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늘 보고 말할 사람도 없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인간으로서의 나는 없어지는 거야.

시설 안에서는 생각하면 힘들어요. 생각을 없애려 했어요.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생각을 안해야 해요. 그런데 3.4일후가 되니까 저절로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구요.

내가 없어져 가는 거지. 그런데 그게 무서웠어요. 사람으로서의 나는 없어지는 느낌이 제일 무서웠어요.(장애당사자 FGI 연구참여자 D)"

"내가 나온 걸 몰라요 1년에 2번씩 집에 가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반찬 잘 나오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난 잘 나온다고 해요. 차마 얘기하려해도 못하겠어요. (장애당사자 FGI 연구참여자 B)"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시설보호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아픔을 주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사람으로서의 내가 없어지는 무서운 경험, 그리고 그곳을 나와서조차 가족에게 부담을 줄까 봐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는 시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다. 325쪽

'이 두 개의 이야기'로써 시설은 그렇다고 일반화해도 될까요? 시설을 없애라 해야 할까요?

2) 활보

“21살 때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활보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난 그저 주는 대로 먹고 해 주는 대로 받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활보한테는 뭐 하고 싶다고 말하면 싫어해요. 활보한테 잘 보이려면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야 해요. 저절로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폭행 폭언 학대 추행 착취? 인권 사각지대라 완전 복불복이예요. 시설에서는 보는 눈이 많고 팀장도 있고 사회재활교사와 국장 원장도 있고 정부 감독도 있어 얼마쯤 통제가 되는데 활보는 통제가 안 돼요.

활보가 집에 있으니 불편하다고 사람들이 안 와요, 활보가 해 주겠지 하고 안 와요. 맛있는 것 사주곤 했는데, 활보가 있으니 활보까지 사주기 부담스러운지 불편한지 이젠 안 사 줘요. 종종 카페에도 함께 갔는데 활보 때문인지 이제 같이 안 가요. 둘레 사람 다 멀어졌어요.

내게 필요한 도움은 1시간이면 충분한데 끝나도 활보가 안 가요, 도와줄 일 없는 날에도 그냥 와요. 활보 때문에 사생활이 없어요. 보호한답시고 사사건건 잔소리 간섭 통제 구속하니 감옥이 따로 없어요.

내 삶과 내 사람살이가 없어져 가요. 그게 무서워요. 하릴없이 그저 연명할 뿐, 사람으로서의 나는 없어지는 느낌이 제일 무서워요.”

“내가 이렇게 사는 줄 가족은 몰라요. 활보가 잘해 주냐고 물어요. 그래서 난 잘해 준다고 해요. 어머니한테도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겠어요.”

이 두 이야기는 활보가 그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사람으로서의 내가 없어지는 무서운 경험, 그리고 가족에게 부담 줄까 봐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 곁에서 활보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다.

이렇게 일반화해도 될까요? 활보를 없애라 해야 할까요?

미주 15 : 탈활보

9. 활동지원 인력

226~227쪽, 활동 지원

2) 본인부담금 감면 혹은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으로 이용시간 확대 : 모든 장애인은 '필요한 시간만큼'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별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활동지원 인력 양성

필요한 시간만큼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 시설에서 나가게 될 장애인의 대부분은, 적어도 태반은,

1주에 24시간×7일=168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므로 168시간÷40시간=4.2명, 대상자 1명당 최소 4.2명의 활동지원사가 있어야 합니다. 휴가나 교육 시 투입할 대체인력도 있어야 하고, 관리 감독할 인력도 있어야 합니다.

개인별 직업 및 주간활동 지원과 관계 및 심리 지원(235~246쪽)을 담당하는 인력 외에 이 만큼 더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대부분의 (적어도 태반의) 입주자에게

입주자 1명당 최소 4.2명의 활동지원사를 배치하되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별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활동지원 인력을 배치하면 어떨까요?

10. 밥그릇 싸움?

탈시설화, 이게 다 돈인데 포기하겠나?

시설들은 대부분 민간 사회복지법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운영자 입장에서 탈시설화는 사업 축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민간 사회복지법인 입장에서는 '시설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 억 원 많게는 수십 수백 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쇄해야하는 탈시설화'가 반가울 리 없다. 87~88쪽

탈시설, 이게 다 돈인데 포기하겠나?

자립생활주택은 대부분 자립생활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상당수 자립생활센터가 활동지원 중개기관도 운영하고 있다.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와 활동지원 중개사업자 입장에서 탈시설은 사업 확대를 의미한다. 대상자 수에 따라 적게는 수천 만 원 많게는 수십 수백 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운용하는 자립생활주택 사업이나 활동지원 사업을 확대시켜 주는 탈시설이 반갑지 않을 리 없다.

탈시설을 주장하려면 먼저 탈시설로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반사 이익이 있는데 탈시설을 주장하면 이해충돌로 보이지 않을까요? 이익집단으로 비치지 않을까요? 탈시설로 이익을 취하는 행태가 탈시설 운동의 대의를 무색하게 하고 동기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미주 16 : 희망

탈시설의 이면과 뒷이야기

1. 탈시설의 희생양

“국외에서도 탈시설에서 이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대다수 발견되기는 했지만 일부 돌봄 공백이 생기거나 갈 곳이 없어서 교도소에 수용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저희들이 잘 접하지 못했던 이면 부분인데 그러한 변화 속에서 희생양이 없도록 좀 최소화하는 데 우선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외국에서도 ‘Easy One First’라는 정책기조 하에서 상대적으로 경증인 장애인들을 탈시설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냐면 거주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다 보니 거주시설에 남게 된 장애인들은 굉장히 장애 정도가 심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가족이 없어서 돌봐 줄 사람이 없고 이런 분들만 남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남은 상태에서 거주시설에 이용자가 줄어들니까 통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이 이 시설 저 시설로 계속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저희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탈시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시설의 존속에 대한 문제를 논한다면 우리가 이런 이면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출처 :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2022. 6. 30 서울복지재단 정책연구실 김현승 연구위원의 [발표](#)

2. 미국 탈시설의 역사

탈시설에 대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연방정부, 주, 도시 중 어느 곳도, 자립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을 개발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심지어 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그랬다.

하지만 1970년대에 언론보도, 소송, 사회운동, 입법 등의 결과로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정신과 시설은 장기 거주민들을 그들의 본래 공동체로 돌려보내기 시작했다.

1965년부터 1980년까지 공공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의 수는 47만 5천 명에서 13만 8천명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역사학자 제럴드 그룹이 적었듯이, “1965년 이전에 많은 환자들은 수용소^{Asylum}에서 수 년에서 수십 년을 보냈는데, 1970년 이후에 수용소 거주기간은 며칠에서 몇 주 정도로 바뀌었다.”

운이 좋은 사람들, 특권층, 지지해주는 든든한 가족을 가진 이들은 자립생활센터,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지역사회 그룹홈에서 지원을 받으며 살아갔다. 그러나 나머지는 노숙자가 되어 거리에서 살거나, 심지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갔다.

교도소 수감은 정신장애가 있다고 여겨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회가 돌보는 주된 방법이 되었다. 2006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 중 절반이 넘는 사람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같은 해, 휴먼라이트워치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재소자의 수가 125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역사학자 마이클 렘비스 Michael Rembis가 적었듯, 이는 “‘시설수용’이 한창이던 1950년 주립 병원에 수용되었던 정신질환자 숫자의 2배에 달한다.”

출처 : [‘장애의 역사’](#), 김 닐슨 저, 김승섭 역, 동아시아, 2020.11.5. 289쪽~290쪽

3.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와 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1908년 미국 동캘리포니아 지역에 설치된 주립시설 ‘펜허스트 주립 학교·병원’은 법령에 따라 정신박약자로 간주된 아이들을 구금하여 훈련시키는 시설이었다. 1200에이커가 넘는 부지에 25채의 건물이 들어선 이 복합단지형 시설에는 동시에 3500명의 아동이 수용되어 강제 격리와 불임수술 등이 자행되었다.

그러나 1974년 펜허스트 거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이 시설의 인권침해 문제를 꺼내들고 시설 폐쇄를 요청하는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

이 소송은 미국 탈시설 운동의 출발점이 된 중요한 사건이었다. 제임스 콘로이 박사는 소송 이후 79년부터 펜허스트에 거주했던 1154명을 14년간 추적 연구해 그들의 삶의 변화를 조사했고, 개인적으로나 가족·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출처 : 비마이너 2017. 12. 22 [기사](#) ‘소송을 통해 탈시설에 다가간 미국’

1979년 이전에 ‘펜허스트에 거주했던 1154명’에게 탈시설 후 14년 동안 나타난 긍정적 변화를 근거로 탈시설을 주장하려는 것 같은데,

2008년 이전에 한국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에게 그 후 14년 동안 나타난 긍정적 변화를 근거로 시설 유지를 주장하면 어떨까요? 앞으로 14년 동안 시설의 주거를 개선하고 인력과 예산을 늘려서 지원해 가다 보면 지금보터 훨씬 나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시설 입주자를 대상으로 “14년간 추적 연구하여 개인적으로나 가족·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다면 시설을 늘리고 시설 입주를 지원해야 한다고 할까요?

참조 : 85쪽 ‘종단 연구를 근거로 탈시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나저나 1154명을 제외한 나머지 2346명은 어찌되었을까요?

유감

시설 주택은 지역사회 주택이 아니고 시설에 살면 지역사회에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시설과 지역사회를 나누어 이리쿵저리쿵하더니 급기야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탈시설을 운운하는데,

개념이 혼돈스럽고 논리가 부실한데도 막무가내로 몰아붙이기 일쑤라, 대거리하자니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무슨 대안이란 시고 내세워 직접 실행할 처지도 아니고 능력도 없지만,

시설 사회사업가들은 얼마나 허무하고 참담할까,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어찌나 하릴없이 그저 냉가슴만 앓다 화병 나지 않을까, 이제 어찌해야 하나 이래저래 얼마나 답답하고 심란할까 싶어,

탈시설에 반대하는 사람인 양 애매히 매도당할 수도 있고 공연히 나서서 무모하게 대세를 거스른다고 조롱당할 수도 있고 뒤늦게 쓸데없이 수선 편다고 핀잔먹을 수도 있음을 예상치 못하는 건 아니나,

밥그릇 싸움으로 오해받거나 그런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 외인이 그나마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미흡한 글이나마 애면글면 써 놓고 보니,

입주자를 사람답게 도우려 애쓰는 사회사업가들이 눈에 밝히고,

입주자가 당당히 주인 노릇 하며 자기 삶을 살고 사람 구실 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모습 그 이야기에 감동하여 ‘아~ 사람 사는 것 같다’ 하던 일들이 떠오르고,

그렇게 살다가 나간 후에 활동지원사 덕(?)에 자기 삶과 돌래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 구실 내려놓게 되고 새 지원 기관 덕(?)에 장애인 전용수단 위주로 장애인끼리 함께하느라 지역사회로부터 멀어졌다고, 탄식하며 울먹이던 어느 사회사업가가 생각나고,

지난 세월 파란만장했던 시설과 사회사업의 역사가 주마등처럼 스쳐가는지라, 만감이 서려 그만 아득해집니다. 2018. 5

미주

1. 케어주택과 사회사업

의료케어에서 생활케어로!

“의사나 간호사는 급성기의 ‘안정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 대한 접근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케어에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안정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었다.

물리치료사나 작업요법사는 마비된 손발을 치료하는 방법, 굳은 관절을 펴는 방법은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비되어 굳은 관절로 ‘어떻게 생활하느냐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케어 담당자들은 기존 전문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방법을 찾기로 했다. - 중략 -

케어 현장은 ‘환자’라는 수동적인 치료 대상 대신에 ‘생활의 주체’라는 새로운 인간상이 형성되는 곳이다. - 중략 - 의사와 간호사는 주체가 되고 환자는 수동적인 대상일 수밖에 없는 상황 - 생명과 관련될 때는 그것만으로도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질병이 아니라 노화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하는 케어는 다르다. 환자에서 생활인으로, 의료케어에서 생활케어로! 노화나 장애를 현실로 받아들여서 각자의 상태에 맞게 ‘생활’하게 하자. - 중략 -

T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6년 동안 침대에 누워 생활했다. 그러나 매일 기능훈련은 빼놓지 않았다. 그래서 왕성한 훈련의욕을 생활의욕으로 바꾸기로 했다. 먼저 외출이라는 이름으로 꽃놀이, 1박 여행, 음주 등을 시작했다.

그러자 훈련으로 고통스러웠던 얼굴 표정이 생기 있게 웃는 얼굴로 바뀌었다. 손발이 마비되어도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 범위도 넓어지면서 신체기능도 좋아졌다.”

「새로운 케어 기술」 오타 히토시와 미요시 하루키, 김영주 옮김, 그린훅, 2005년

구구절절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이야기입니다. 환자로 보고 치료하거나 훈련시키거나 안정시키려 들기보다, 사람으로 보고 ‘생활’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글을 사회사업에 그대로 옮겨 읽어도 좋겠습니다.

전문가라 하는 어떤 사람들은 복지사업으로 치료 교육 보호하려 합니다. 사회사업가는 당사자가 ‘자기 삶으로 생활’하게 도우려 합니다.

사회사업 현장은 후원 봉사 대상자, 보호 대상자, 교육 훈련 대상자, 치료 대상자, 생활지도 대상자, 사례관리 대상자... 대상자를 늘려 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 삶과 사람살이의 주체로 세워 가는 곳입니다.

보호 대상자에서 자기 삶의 주체로, 프로그램 복지에서 생활 복지로, 당사자의 욕구와 역량에 맞게 ‘생활’하게 도우면 좋겠습니다.

케어시설이니 의료집중 등 전문 서비스 제공 기관이니 하는 시설로 전환하면 당사자 개개인의 삶과 사람살이를 지원하려 할까요? 케어나 의료 서비스 위주의 시설에 사회사업가가 있어야 할까요?

그런 곳에서 당사자가 저마다 자기 삶을 살면서 자기 일에 주인 노릇하거나 주인 되게 도울 수 있을까요? 둘레 사람과 연락하고 만나고 왕래하며 이런저런 일에 서로 함께하고 돕고 나누게 할 수 있을까요? 지역 사회 일반 수단을 이용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도울 수 있을까요?

2. 미신고 시설

미신고 시설 :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출처 :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67~69쪽 ‘다. 미신고 시설 관리’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도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다음과 같이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미신고 시설 아닌가요?

“보증금 300만원 월세 15~40만원. 월세 조정 및 전세 전환 가능.

생활비는 본인 부담. 단, 2022년 현재 정착지원금 1,500만원과 매월 수급자는 약 110만원, 비수급자는 약 60만원씩 지원,

지원 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생활, 금융관리. 부족한 자원은 자체 서비스인력이 추가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 전반 지원”

집세와 생활비를 당사자가 부담한다지만 실은 서울시가 주는 겁니다. 기존 시설과 다른 점은 세입자로서 입주하게 한다는 점뿐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탈법, 편법을 보여줍니다.

예컨대 공유주택, 임대형 기숙사, 원룸형 주택 따위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 시설 주택 입주자를 세입자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대상자를 세입자로 입주시킵니다. 보증금 및 월세, 생활비 등을 사실상 무이자로 용자해 주고 보증금 및 월세, 생활비 등으로 회수합니다.

미신고 시설이 아닙니다. 임대주택입니다.

3. 분산형 시설은 주소가 각각 다른 여러 호의 주택을 한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참고 : [라운누리](#), [동행빌리지](#) | [엠마우스](#) | 장봉**혜림원**, [교남](#)소망의집...

4. 수용시설

이른바 ‘시설화’에서 시설은 수용시설 같은 시설입니다.

당사자가 들어 사는 곳이 아니라 대상자를 수용 보호하는 곳, 입주하는 곳이 아니라 입소하는 곳,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는 없고 복지사업만 있는 곳, 집단으로 움직이며 단체 생활 시키는 곳...

이와 같은 시설로 인하여 시설화를 이야기합니다.

시설이 수용시설에 가까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거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설은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5. 자주, 독립생활, 주거 독립, 자립적 생활

- 1) ‘자기 삶을 선택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음, 선택과 통제의 자유, 자신의 생활 형태와 일상 활동에 관한 선택과 통제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음’ 이는 자주성이나 독립생활 개념에 가깝습니다.
- 2) ‘홀로 사는 것’ 이는 주거의 독립, 독립 주거일 뿐입니다.
- 3) ‘스스로 일상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는 자립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립생활의 요건입니다.
- 4) 자립적 생활을 ‘자기 삶을 선택 통제 결정할 수 있음’으로 정의한 것은 자주성이나 자치 능력과 혼동한 것입니다.
- 5) “홀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 것은 영어에서도 living independently가 홀로 또는 따로 산다는 뜻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스스로 일상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만 해석해서도 안 된다.” 한 것은 이것이 자립적 생활(independent living)의 일반 개념이라는 점을 반증할 뿐입니다.

요컨대 자립과 독립과 자주를 혼동하여 ‘자립적 생활’이라는 말의 뜻을 자의적으로 왜곡 조작했을 뿐 아니라 사전적 의미나 언중의 개념을 부정함으로써 언어를 오염시키고 의사소통을 혼잡스럽게 했습니다.

6. 세계인권선언 제13조에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했고 우리나라 헌법 제14조에도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했는데,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이런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니요? 이런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렇게 ‘그냥 툭’ 던지다니요?

7.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활동지원사를 1:1로 배치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얼마나 아파 혼자서 둘 이상의 아이를 돌보는 집은 어떨까요?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주자 1명당 최소 4.2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면 어떨까요? (1주 40시간 기준으로 168시간÷40시간=4.2명)

8. 어느 탈시설 토론자의 지역사회 이야기

출처 : 더숨99지원센터 제3회 콜로키움 강○○ 센터장 [토론](#) 영상

1:54 결국은 거주시설 중심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곳에 새로운 주거를 정착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7:29 이제는 지역사회로 주택이 옮겨지다 보니

10:15 지역으로 이전

10:20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거 공간 지원, 지역사회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 내 안정적 주거 지원

18:22 시설 거주자가 지역사회 거주 전환 시

19:03 지역사회 거주 전환 초기 집중지원

19:33 개인 지역사회 전환, 지역사회 생활단계

지역사회와 탈시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탈시설 토론에서 지역사회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할까요? 지역사회 전환이니 정착이니 지역사회 생활이니 하는 게, 대체 탈시설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일까요?

시설 주택에 살든 일반 주택에 살든,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게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사회 어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체 왜? 탈시설을 논하면서 지역사회를 운운할까요?

지역사회와 탈시설은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지역사회와 시설의 관계, 지역사회와 시설 입주자의 관계, 그 이상의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요컨대, 지역사회는 탈시설 담론에서 쓸 용어가 아닙니다.

9. 시설은 주택이 아니다?

시설의 주거 시설은 주택입니다.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가 마련하여 제공하는 주택, 그래서 전담 지원 기관

이 달려 있는 주택, 주택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주택이 아니라고 하면,

- 1) 시설을 ‘거주하는’ 곳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 2) 탈시설 후에 거주할 곳을 보편적 주택이나 일반 주택, 지역사회 주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시설은 전용 주택이나 특수 주택, 지역사회 외의 주택 곧 주택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 3) ‘장애인 거주시설’이니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니 하는 표현도 쓰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난감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 공간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시설’ 곧 사회주택과 지원 기관의 결합체이므로, 시설이 주택이 아니라고 하면 장애인 거주시설은 탈시설의 대상 시설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설은 주택이 아니라고 하고 탈시설을 주장하다가 앞뒤가 맞지 않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자기모순, 자가당착에 빠지곤 합니다.

“시설은 주택이 아니고 OO이다.” 하려면, 탈시설을 이야기할 때 주택에나 어울리는 말은 물론이고 ‘OO’와 어울리지 않는 말도 버리거나 다른 말로 바꾸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10. 시설화한 환경 요소 제거 vs. 탈시설

제목은 “탈시설 왜 해야 하나? 장애인이라고 왜 시설에 살아야 하나?”인데, 본문에는 ‘UN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가이드라인’이라면서 “대규모 거주시설은 물론 소규모 그룹홈이나 가정이라 할지라도 시설화된 환경 요소를 지닌다면 자립생활 환경이라고 볼 수 없음. 즉 시설화된 환경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제목과 본문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본문의 논리는

대전제 : 시설에 시설화한 환경 요소가 있다.

소전제 : 그래서 자립생활을 할 수 없다.

결론 : 그러므로 탈시설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데,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가 난해합니다.
결론이 전제와 상관없어 보입니다.

시설화한 환경 요소가 문제라면, 그래서 자립생활을 할 수 없다면, 시설화한 환경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시설화한 환경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해야 할 텐데, “그러므로 탈시설해야 한다.” 하니 의아합니다. 시설화한 환경 요소가 문제인데 탈시설하라는 논리는 지나친 비약입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였고 프리셀 대표이사였던 박숙경 교수가 책임 연구원으로 집필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연구]에도 비슷한 논리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자는

“2012 유럽 탈시설화 공동기준은 시설적 문화가 시설화를 촉발시키므로 탈시설화 정책은 시설적 문화 제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인용하고, ‘시설적 문화가 시설화의 원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탈시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고서의 논리는

대전제 : 시설화 현상이 있다.

소전제 : 시설적 문화가 시설화의 원인이다.

결론 : 탈시설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데,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가 난해합니다.
결론이 전제와 상관없어 보입니다.

전제는, 시설화라는 문제 현상이 있는데 시설적 문화가 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시설적 문화를 제거해야 한다.’ 해야 할 텐데 ‘탈시설해야 한다.’ 합니다.

11. ‘탈 보호’가 자유의 선결 조건입니다.

‘탈 보호’는 당사자로서는 보호·감독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지원 기관 으로서는 사람에 대한 무제한의 포괄적 보호·감독 의무에서 벗어나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주의 의무만 지게 되는 것입니다.

탈 보호하면 서로 얼마쯤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주택에서 탈 보호할 수 있다면 시설이라고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탈시설 지원 정책에서 사회사업이 확보해야 할 것이 있다면 ‘탈 보호’ 바로 이것입니다. 무제한의 포괄적 보호·감독 의무를 벗고 제한적 주의 의무만 지도록, 정부 및 당사자와의 계약 조건을 바꾸는 겁니다.

본디 거주시설은 보호·감독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 거주시설’ 정의에도 ‘보호·감독’ 기능이 없습니다. 그 대상자도 일반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시설 입주자라고 다 보호·감독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12. 점유권

시설 주택이 어디에 있든 규모나 형태가 어떠하든, 한집 한방에 몇 명이 살든, 여느 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자에게 점유권이 있는 각 입주자의 주거 공간입니다. 시설 주택을 누가 어떻게 마련했든, 누구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든, 각 입주자에게 점유권이 있습니다.

점유권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① 법률용어사전 : 점유권이란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물권의 일종이다(민법 제192~209조).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인 점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200조). 예를 들면 시계를 절도한 자는 그 시계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정당한 점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도둑맞은 자는 자기가 소유자라는 이유로 도둑의 점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

② 두산백과 : 점유는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의 어떤 권원(權原)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거나 도둑의 점유처럼 권원이 없어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점유권은 권원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오직 점유라는 사실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13. 좋은 시설

- 1) 입주자가 저마다 각각 자기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자기 삶을 살게 돕는 시설
- 2) 입주자가 자기 일 곧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이런저런 과업에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는 시설
- 3) 입주자가 둘레 사람과 함께하게 돕고, 둘레 사람이 입주자와 함께하게 돕는 시설
- 4) 입주자가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수단으로써 사람들과 어울려 복지를 이루게 돕고, 그 어울리는 관계 소통이 갈수록 평범해지게 돕는 시설
- 5) 입주자가 마땅히 해야 하거나 하면 좋은 역할, 사회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역할, 사람 구실을 잘하게 돕는 시설
- 6) 입주자 개개인의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의 필요에 따라 시설 밖 주거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시설
- 7) 입주자 개개인이 각각 독립가구로서 독립생활하게 돕는 시설
- 8) 지역사회가 입주자도 살 만하고 입주자와 더불어 사는 곳이게, 장애인도 살 만하고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곳이게, 하는 시설

이런 시설이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설이 이렇게 해 왔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를 개선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면 모든 시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4. 이렇게 못할 수도 있나요?

발제 영상 속의 정선옥 님처럼,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수단을 이용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둘레 사람에게 사람 구실 하며 산다고,

갈수록 자주하는 일이 많아진다고, 갈수록 둘레 사람과의 관계 소통이 풍성해지고 자연스러워진다고, 갈수록 더 평범하고 가치 있는 구실을 더 많이 한다고, 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이렇게 산다고,

탈시설하면 이렇게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토론 영상에서 슬라이드에 나열하신 모습, 구두로 설명하신 모습은 대개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발바닥행동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에도 그렇게 사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장애인 일자리에 가고 주간센터, 복지관, IL센터에 가면, 지원주택센터 사회사업가는 무엇을 하는지요?

시내에 있는 SH주택을 한 채씩 주고, 매월 1인당 127만 8천 원씩 연금과 생계급여 등을 주고, ‘[공공일자리](#)’로써 1인당 매월 83만원씩 임금을 주고, 코디네이터 외에 주거 코치와 활동지원사까지 있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런 인력과 자원으로 이렇게밖에 못하다니, 이렇게까지 못할 수도 있다니, 이런 조건이면 우리는 각 입주자의 삶과 사람살이를, 지역사회를, 이리저리하게 생동시키겠는데…

이렇게들 수군거릴 것 같습니다.

15. 탈활보

이 보고서가 시설을 비판하는 논리로 활동지원 사업을 비판한다면 뭐라 할까요?

이것이 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현실이며(325쪽),

당사자 관점에서의 이런 이야기가 활보 개념 정의이고(11쪽),

활보병이라고도 하는 ‘활보화’는 이렇게 활보에 의해 자극이 없이 단조롭게 반복되는 생활로 인해 꿈과 희망,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이며(13쪽),

탈활보화는 ‘탈활보+화’가 아니라 ‘탈+활보화’이지만 탈활보화 정책은 첫째 ‘탈활보+화’ 곧 활보를 지역사회의 보편적 인력으로 바꾸는 것이고(15쪽),

(근거는 없지만 아무튼) 활보 교육과 지도 감독 및 서비스 방식 개선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328쪽),

활보 의존을 예방하고 신규 활보 채용을 제한하고 활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250~251쪽)

보고서의 해당 문장에서 ‘시설’ 자리에 ‘활보’를 대입했을 뿐입니다.

16. 희망

탈시설화 정책이 국가의 책임을 대신 저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들, 그리고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자괴감을 일으키게 하는 칼날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풀어나가야 할 장애를 가진 시민의 온전한 시민권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다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는 여정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 그 길에 이 보고서에 담긴 연구 내용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331쪽

같은 마음입니다.

이 비평이 탈시설 정책을 주창해 온 인권운동단체와 자립생활센터들과 그곳의 활동가들 또는 이 보고서의 연구자들을 적대시하고 자괴감을 일으키게 하는 칼날이 아니라 장애인 시설 입주자들의 사람다운 삶과 사람살이를 위해 더 나은 길을 찾아 나선 탈시설 운동의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가는 여정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길에 이 비평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